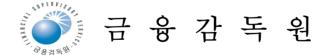


# 외국환거래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2012. 12.



문의 : 외환감독국 외환조사팀 TEL. (02) 3145-7942 ~ 7945 FAX. (02) 3145-7949

동 자료는 외국환거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외국환거래법, 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니며, 대외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관련법령과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우선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외국환거래절차 등은 관련(해당)기관에 확인(문의)하여야 합니다.

## 목 차

Ι.	외환거래제도	1
	1. 외국환거래제도 개관         2. 외국환거래법령의 체계         3. 외국환거래법령의 적용범위	10
Π.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의무	14
	1. 외국환거래당사자의 신고의무         2. 외국환은행의 확인 및 통보의무	14 17
Ш.	지급등의 절차ㆍ방법 및 위규사례	23
	1. 지급등의 절차 ···································	27 30
IV.	자본거래 신고 및 위규사례;	38
	1. 자본거래 총칙         2.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거래         3. 금전대차 및 채무보증         4. 증권 발행 및 취득         5. 기타 자본거래         6. 자본거래 신고 관련 위규사례	40 42 47 52
V.	해외투자 신고 및 위규사례"	71
	1. 총칙	73 77 79 83 88

113	[. 현지금융 신고 및 관련 위규 사례	
	1. 현지금융 ····································	
	[. 외환거래 신고 및 위규시 처리절치 1. 신고등 절차	
	2. 위규시 신고 및 제재절차 ····································	
추진내용130	참고>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효율화방안 =	

## I 외환거래제도

## 1 외국환거래제도 개관

#### 가. 외국환거래제도의 의의

- □ 개방경제체재 하의 원활한 대외거래를 위해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대외거래의 자유를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외환시장 및 국민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
- □ 한 국가의 외국환 수요 및 공급이 균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외환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경우
  - 통화 및 재정 정책, 환율의 유연성 제고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통해 대외 불균형을 해소**
- □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제도는 외국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최종 적인 목적이 있음

#### 나. 외환거래제도의 특징

## (1) 외국환거래의 점진적 자유화

「외국환관리법」(1961.12월) 원칙적 규제, 예외적 자유 (Positive System)

 $\hat{\Gamma}$ 

「외국환거래법」(1999.4월) 원칙적 자유, 예외적 규제 (Negative System)

#### <외국환거래제도의 변천 추이>

- □ 1946년 1월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효시인「대외무역규칙」(미국 군정법령 제39호)와 그 후의「외국과의 교역통제」(미국 군정법령 제93호) 제정으로 모든 외환거래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실시
- □ 이후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이 활발해지던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부족한 외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1961년 12월「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고 **외환관리의 제도적인 체제**를 갖추기 시작
  - 외환 지급시 원칙금지·예외허용방식(positive system)을 엄격히 적용하여 개인 및 기업의 외환사용을 억제하고 부족한 외환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안정에 기여

- □ 1980년 이후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개방압력이 증대되는 등 경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 시작하였으며 1988년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을 철폐 □ 1990년대 들어서도 외환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92년 9월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체계(positive system)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 개편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외환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8년 6월 제1차 '외환자유화방안' 발표하고 1999년 4월「외국환거래법」시행과 함께 제1단계 자유화조치 실시 ○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고,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원칙규제 ·예외허용체계 (positive system)에서 ○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 개편함에 따라 민간부문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한 □ 2001년 1월 제2단계 자유화조치를 시행하여 여행경비, 해외 이주비 및 해외예금 등의 한도를 폐지하는 등 개인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고
  - 2004년 4월에는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중추(financial hub)로 육성하기 위해 일부 남아 있는 외환규제를 3단계에 걸쳐 추가로 완화하기 위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발표

- □ 2005년 6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런하였고
  - 2006년부터는「외국환거래법」부칙의 일몰조항(자본거래 허가제 적용시한)에 의해 자본거래 중 허가사항을 모두 신고사항으로 전환
- □ 2006년 5월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시행을 위한 **제2차 '외환 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그 중 제1단계 자유화 조치인 원화 국제화,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 등을 추진
- □ 2009년 2월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입에 따라 동 법률과 외국환거래법령의 용어를 일치시켰으며,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범위를 정비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부문의 거시건정성 제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0년 7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 외국환은행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 등을 도입하고, 외화 대출을 해외사용 용도 제한

#### <참고> 외환자유화 조치 경과

1946년 1월「대외무역규칙」제정 (미군 군정법령 제39호) 「외국과의 교역통제」제정 (미군 군정법령 제93호)

#### 1961년 12월 「외국환관리법」제정

1998년 6월 "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

1998년 9월 「외국환거래법」제정

####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시행

2002년 4월 "외환시장 중장기발전 방향"

2006년 5월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발표

2009년 2월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범위 정비

2010년 7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추진

\* 2002년 발표한 당초 2011년 완료 예정이었던「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2009년까지 앞당겨 완료하기 위해 2단계에 걸친 자유화로 추진하겠다는 계획

##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시장중심의 운영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확대(등록요건 완화)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
 □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의 거래는 신고등 의무 면제
 □ 외국환관리 권한(행정권)의 일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위탁
 □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유도
 ⇒ 외국환업무취급기관(특히,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래 유도

####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1999.4월에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 등록요건
  - 자본 : 재무구조 적정(금융감독원 확인)
  - 시설 : 외환정보집중기관에 전산망연결(한국은행이 확인)
  - 인력 : 영업소별 경력 2년 이상의 외화업무 종사자 2인 이상
-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종류(금융회사로 제한)
  - 외국환은행, 체신관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보험사업자, 신용협동조합
    - \* 당해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외국환업무 영위 가능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업무로서 하는 행위 및 거래는 신고 등을하지 않아도 됨

#### < 외국환은행 >

- □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의 국내영업소로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업무범위가 가장 넓음
  - ㅇ 외국환거래법상의 모든 외국환업무 영위 가능
    - 특히,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외화예금 수입 등의 업무를 독점적으로 영위
  - ⇒ **외국환관리기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대신 **독점적 업무영역 확보**를 통해 수익을 보장

## (3) 유사시 안정장치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 □ 기획재정부장관의 비상조치권(safeguard, 「외국환거래법」제6조)
  - 대외지급·수령 및 대외거래 일시 정지
  - 자본거래 허가제 실시, 가변예치의무 부과 등
- □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 지정·운영
  -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정보를 중계·집중·교환
- □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국제금융센타 등에 외국환거래 정보 제공
-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 < 외국환거래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의 비상조치권(safeguard) >

유 형	주요 내용	시행 요건
대외결제·거래의 일시정지 (제6조 1항 1호)	·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영수,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시정지	· 천재지변·전시·사변, 국 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 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외환집중제 (제6조 1항 2호)	·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의 한은·정부기관·외평기금· 금융회사 등에의 보관· 예치·매각의 의무 부과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으로 인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거래 허가제 (제6조 2항)	· 자본거래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	· 국제수지·국제금융상 심 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자변예치 의무제 (제6조 2항)	· 자본거래시 당해거래와 관련해 취득하는 지급수 단의 일부를 한은 · 외평 기금 또는 금융기관에 예 치토록 의무화	차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본이동으로 인해 통화 정책·환율정책·기타 거시 정책수행에 있어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외국환정보집중기관 >

#### □ 의의

-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에 관한 자료를 중계, 집중, 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
- □ 외국환정보집중기관 지정
  -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은행을 우리나라 유일의 외환정보집중 기관으로 지정

#### □ 외환정보의 집중

- 보고기관(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외환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해야 함 (집중기관은 일정한 외국환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
- 이용기관<sup>\*</sup>은 외환전산망 자료를 외화자금유출입 동향 및 외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외환수급·외채 등 외환통계 작성, 외환 거래 사후관리 등에 활용

\* 정책수립기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보활용기관: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국제금융센터, 금융정보분석원

### (4) 외국환 관련 권한의 위임ㆍ위탁

- □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국환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원적으로 부여
  -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정적인 외환수급 기반조성, 외환시장의 안정, 기준환율의 결정, 외평기금 운용관리, 긴급시 비상조치권 등 외환정책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보유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및 감독, 자본거래 신고,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 지급 및 영수방법 신고, 각종 검사 감독 및 제재 권한도 보유
  - □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상의 권한중 상당 부분을 다른 기관에 위임, 위탁
    - 수탁기관은 한국은행, 관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외국환은행 등

## < 외국환거래 관리 기구 및 주요 업무 >

관리기구	주요 업무
기획재정부	<ul><li>외환정책 수립 및 운영</li><li>외환거래에 대한 제한 및 허가</li><li>외환거래의 비상정지 명령 등</li></ul>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ul> <li>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환건전성 감독</li> <li>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업·개인 등의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등</li> <li>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지사설치 등에 대한 신고 및 사후 관리</li> </ul>
한국은행	<ul> <li>외환시장 운영</li> <li>외환거래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업무</li> <li>환전영업자 및 외환중개회사에 대한 관리감독</li> <li>외환거래정보의 집중 및 관리 등</li> </ul>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 외환거래 신고접수 및 확인 · 외환거래 사후관리 등
국세청	· 외환거래관련 조세부문 확인·모니터링 등
관세청	<ul> <li>지급수단의 휴대반출입 신고</li> <li>개항장내 환전영업자 관리감독</li> <li>환치기, 수출입거래, 수출입거래 관련 자본거래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등</li> </ul>
금융정보분석원	• 외환거래관련 혐의거래 정보분석 등

## 2 외국환거래법령의 제계

	법률	대통령령	부령·고시	유관기관
			외국환거래규정·통첩	한국은행 제규정
기본	외국환	외국환 거래법	금융기관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은행연합회 외국환거래 업무취급지침
법규 	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금융위원회 제규정·통첩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 관리규정	
관련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법규			외국인투자 및 기술 도입에 관한 규정	
	한미행정협정, 한국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 3 외국완개래법령의 적용범위

#### □ 외국환거래법규의 적용범위

주체 거래	거주자간	거주자·비거주자간	비거주자간
원화거래	N/A	해당	해당
외화거래	해당	해당	N/A

#### 외국환거래법 제2조(적용 대상)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 □ 행위의 주체(인적 대상)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
  - → 주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적용 범위 및 내용이 다름
- □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국적이 아닌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
  - 거주자: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 대한민국 재외공과
      -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 다음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 ·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 하고 있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
        -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 o 비거주자 : 거주자 이외에 개인 또는 법인
  - 외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 민국 법인의 해외지사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 미합중국군대 등이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 군대등의 비세출자금 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주하는 조직체
    - 다음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
      -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 ·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 □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의무

## 1 외국환거래당사자의 신고의무

#### 가. 외국환거래당사자의 신고의무

- □ 지급등(지급 또는 수령)의 절차(법 §15/시행령 §29/규정 §4-2)
  -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급등에 앞서 당해 지급등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행위가 법・영・규정 및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등(허가・신고수리・신고・확인・인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등을 먼저 하여야 함
- □ 지급등의 방법 신고의무(법 §16/시행령 §30/규정 §5-4, §5-5, §5-8, §5-10, §5-11)
  - 상계, 상호계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방법,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고등을 먼저 하여야 함
- □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신고의무(법 §17/시행령 §31/규정 §6-2, §6-3)
  - 지급수단등(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등을 먼저 하여야 함

- □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법 §18/시행령 §32/규정 제7장~제9장)
  - 예금,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 증권취득 및 발행, 파생금융거래,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투자 등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등을 먼저 하여야 함

## 나. 채권회수의무(법 §7 / 시행령 §12 / 규정 §1-3)

- □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회수의무 대상채권 : 1건당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sup>\*</sup>
    - \* 예외채권
      - 1.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 2.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유증,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 3.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 전 채권
  - 채권회수기한 :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sup>\*</sup>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채권회수기한을 연장<sup>\*\*</sup>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 다음 채권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 제외 사유
      - 1. 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 2.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 3.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로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 4.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 채권회수기한 연장 한국은행총재 신고 제외 사유
  - 1.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부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 만기일부터 3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지식경제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자료제출의무

- □ 지급등의 자료제출(규정 §4-2)
  -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 \*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지급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 해외여행경비·해외이주비·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을 제외하고 거래 또는 행위 발생 전에 하는 지급(사전개산지급) 등은 증빙서류 제출 예외
- □ 사후관리 자료제출(규정 §10-10)
  - 외국환거래당사자는 사후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자료를 한국은행총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총재가지정하는 사후관리은행장 또는 당해거래 신고 등을 한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사후관리대상 거래로는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해외부동산취득, 현지금융 등이 있음

#### 2 외국환은행의 확인 및 통보 의무

#### 가. 지급·수령 및 신고대상 여부 확인의무

- □ 외국환은행은 그 고객과 외국환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의 거래 또는 지급등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법 §10)
  - 외국환은행장은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미화 2만불(동일자·동일인 기준)을 초과하는 수령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영 및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확인 하여야 함(규정 §2-1의2)

#### Q&A(은행의 확인의무 범위)

- Q. 법 §10, 규정 §2-1의2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대해 신고등을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은행의 확인의무는 어느 정도까지 하여야 할 것인가?
- A. 법규상 단순히 신고대상여부 및 신고여부 확인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실제 거래를 취급하는 기관에게 있어서 수취인, 금액, 송금의 반복성 등의 정황에 따라 신고사항이 적절한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자금세탁방지법상 확인의무와 병행)

## 나. 사후관리 의무(규정 §84, §9-7, §9-25, §9-40, §10-9, §10-10)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등은 금융기관<sup>\*</sup>을 제외한 거주자의 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설치, 해외부동산취득) 등의 신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함

#### <사후관리방법>

- 해외직접투자(해외지사) 관리대장 작성
- 신고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 \*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서 사후관리
- 신고등의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① 기한만료일 30일 이내에 독촉,
   ② 독촉 후 6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 감독원장에게 미이행 보고

#### 주요 사후관리 보고서 및 제출기한

구 분	보고서 명	제출기한
*1) A)	-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설치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
해외   지사	- 부동산취득(처분)	취득(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
	- 연도별 영업활동상황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
해외	-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부동산 취득후 3월 이내
부동산	-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부동산 처분(변경)후 3월 이내
	- 외화증권(채권)취득 보고서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 송금(투자)보고서	송금 또는 투자 즉시
해외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
직접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투자금액 합계 50만불 이하 제출 면제
투자		· 투자금액 합계 100만불 이하 투자현황표로 갈음
	취계 미 레버웨기 취소되고기	청산자금 영수 또는 원리금 회수후 즉시
	-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 비거주자에의 전액 지분매각은 청산에 준함

## 다. 외국환거래내역 등 통보의무(규정 §10-12)

- □ 외국환은행장 등은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 등에게 거래내역 등을 통보하여야 함
  - 통보대상 거래 등은 인별·건별 내역을 포함하며, 통보 시기는 대부분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임

## 기관별 주요 통보대상 거래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제4-8조③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연간 5만불 이내의 증빙없는 지급,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할 수 있는 연간 5만불 초과 지급, 건별 1만불 이상 거주자의 해외 에서의 예금거래, 연간 10만불 초과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건당 1만불 초과 지급·수령  제7-21조 건당 5만불 초과 외국의 부동 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 는 회원권 매매내용  제7-37조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부터 미화 1만불 초과 인출  제9-9조 해외직접투자 내역: 개인, 개인 사업자에 한함  제9-34조 국내지사가 외국본사로부터 영업자금 도입한 내역	제2-2조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1 만불 초과 대외지급수단 매입 제2-3조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국통화, 여행자카드 및 여행자수표를 매각 제2-13조 제3-2조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 제4-8조①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연간 5만불 이내의 증빙없는 지급,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할 수 있는 연간 5만불 초과 지급, 연간 10만불 초과 제3유학생 및 해외제자의 해외여행경비, 건당 1만불 초과 지급·수령 제5-4조 채권·채무 상계 제5-5조 상호계산에 의한 지급등 제5-11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제6-2조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제7-16조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대출 제7-21조 건당 10만불 초과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회원권매내용 제8-4조 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상황 제9-9조 해외직접투자 내역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 포함 제9-25조 해외지사 설치 사후관리 내역 제9-40조 외국부동산 투자 사후관리 내역 제10-6조 연간 미화 10만불 초과 해외여행경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실적, 여행자카 드 결제 실적	제2-2조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1 만불 초과 대외지급수단 매입 제2-3조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국통화, 여행자카드 및 여행자수표의 매각 제4-8조(2)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의 지급 또는 수령,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연간 5만불이내의 증빙없는 지급,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할 수 있는 연간 5만불 초과 지급,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지급,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등 제5-4조 채권·채무 상계 제5-8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수출입대금의 지급등 제5-11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제6-2조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제6-3조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제9-9조 해외직접투자 내역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 포함 제10-6조 연간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 실적 또는 연간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외국통화 인출 실적

## 라. 자금세탁방지법규상의 거래 확인의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4, §4의2, §5의2)

- □ 외국환은행의 경우 외국환거래시 동 자금이 자금세탁을 위한 거래인지 등에 대한 주의 필요
  - 자금세탁이라 함은 불법자금을 합법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으로 이 과정에서 은행과의 거래가 수반되는 바, 불법적인
     거래에 금융기관이 연루되지 않도록 고객 및 거래확인 철저
- □ 고객확인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
  -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천만원 또는 1만불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
- □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고객이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또는 수령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 □ 혐의거래보고 의무(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혐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 혐의거래·거액현금거래 미보고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17조)

마. 실명확인의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3, 시행령 §4)	
□ 거래자의 신분증 확인을 거쳐 실지명의에 의해 거래해야 함	
<ul> <li>예외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미화 100불 상 이하의 외국환의 매입 및 매각 등</li> </ul>	당
□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ul> <li>개인의 외국환거래 내용도 비밀보장거래로서 외국환거래</li> <li>및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 대</li> </ul>	
는 ''는 ''는 ''는 '' '' '' '' '' '' '' '' ''	반

□ 실명확인의무 위반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7)

## Ⅲ 지급등의 절차·방법 및 관련 위규사례

## 1 지급등의 절차

지급과 수령의 대전제 :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환거래규정 §4-1②】

### 가. 지급등의 절차(규정 §4-2)

- □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 국환은행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함
  -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급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법, 영, 이 규정 및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을 하기에 앞서 그 신고등을 먼저 하여야 함

#### Tip(외국환거래법규위반시 지급 및 수령)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급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고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 영 및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 (지침상 입증서류 요구)하고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지급등을 할수 있다. 다만, 수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수령할 수 있다 (규정 §4-2③)

위반사실을 보고받은 제재기관의 장은 위반한 당사자가 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처분 확정시까지 지급등을 중단시킬 수 있다.(규정 §4-2④)

## 나. 거주자의 지급등의 절차 예외(규정 §4-3)

□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 중 연간 5만불 이내의 지급 등의 경우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가 외국환은행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지급등을 할 수 있음(확인절차는 필요)

지급등의 절차 예외 (증빙서류 제출없는 지급등 거래)	비고
○ 대상 : 거주자 (외국인거주자 제외)	
⊙ 예외거래	
1. 이 규정에 따른 <b>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b>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b>지급</b>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거래의 내용을
가.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자본거래의 경우에도 포함하여 합산)인 경우 나.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지급 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설명하고 제2-1조의 2(지급 및 수령) 의 절차에 따라 확인 -지정외국환거래은행 지정
2.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만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외국환은행 의 장으로부터 수령사유를 확인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거래의 내용 을 설명하고 제2-1조의 2(지급 및 수령)의 절차에 따라 확인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	
4.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지급(해외여 행경비,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관련 거래 제 외)	-거래 또는 행위발생 후 일정기간 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지급 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정산의무면제)
5. 전년도 수출실적 미화5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 방식 수출대금의 수령 및 전년도 수입실적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입대금의 지급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
6. 외촉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	·지출비용을 수령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7.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관련규정에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한 자금의 지급	

## 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규정 §4-4)

- □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경우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수령은 규정 §4-2에 따름)
  - \*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대상
    - 1.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 범위 이내의 경우
  - 2.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범위 이내의 경우
  - 3.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 4. 주한 외교기관이 징수한 영사수입 기타 수수료의 지급
  - 5.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실적 범위내의 지급
  - 6. 제2-3조제4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비거주자의 지급
  - 7. 기타 인정된 거래에 따라 국내에서 취득한 자금의 지급
  - 다만 외국환은행장 확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금취득경위 입증서류 없이 연간 5만불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가능

## 라. 해외여행경비의 지급(규정 §4-5)

-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휴대수출할 수 있음
  -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외체재 또는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특히 해외유학생의 경우에는 매 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마. 해외이주비의 지급(규정 §4-6)

- □ 해외이주비는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의 경우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자의 경우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휴대 수출할 수 있음
  - 해외이주비 지급신청자는 세대별 해외이주비(해외이주예정자 포함)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이주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화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바.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절차(규정 §4-7)

- □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보유하던 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국내 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등을 국외로 반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와 지급증빙서류<sup>\*</sup>를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①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 동산매각자금확인서
  - ②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등의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 ③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2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 다음의 내용은 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가. 상계 및 상호계산(규정 §5-4, §5-5)

- □ 외국환은행장앞 신고거래(상계)
  - ① 거주자가 일방의 금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경우
  -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국내출자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 한국은행총재앞 신고거래

- 신고예외 및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상계거래
- 일괄상계 및 다자간 상계거래 (다국적 기업의 경우 특히 주의)

### □ 외국환은행장앞 신고(상호계산)

- 상계대상 거래가 신고를 요하는 경우 신고를 먼저 해야 함
- ㅇ 결산주기는 회계기간범위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대차기 잔액은 결산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신고한 후 지급또는 수령해야 함

### 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규정 §5-8)

- □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1.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가.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매입 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나.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 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가.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 하고자 하는 경우
- 나.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음

## 다.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등(규정 §5-10)

-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결제를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등을 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은행총재앞 신고 필요
  - 지급인 또는 수취인별 제3자 명의를 이용한 분산송금 등이 일명
     '환치기'(대체송금) 등 불법 외화자금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은행은 특히 주의하여 거래

## 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규정 §5-11)

- □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포함)에는 예외적인 경우<sup>\*</sup>를 제외하고 **한국은행총재앞 신고** 필요
  - \* 외항운송업자와 승객간에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안에서 매입· 매각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등을 하는 경우, 해외여행자 또는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우 등

### 3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신고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또는 증권(지급수단등)을 직접 휴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규정 제6-2조)

구 분	허가·신고 대상 거래
허가 및 신고예외	· 1만불 이하 지급수단의 수출·수입 · 외국환은행의 환전용 내국통화 수출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의 신고를 한 경우 · 자본거래 신고를 한 자의 신고된 바에 따른 기명식 증권의 수출입 등
관할세관장 신고대상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1만불 초과 지급수단의 휴대 수입 · 국민인 거주자의 1만불 초과 지급수단의 휴대 수출 · 기타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규정 제2-3조제1항제3호) (휴대수출입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가능)

\* 한국은행총재앞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 【규정 제2-3조 제1항 3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7-4호 서식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에게 신고

가.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의** 지급. 다만,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을 적용

\*국민인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위하여 내국통화로 한 예금.신탁거래

- 나. 외국인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의 지급 다만,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 한 국내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담보제공 또는 보증에 따른 대지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담보·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의 지급
- 라. 제2-6조(은행의 대출로서 거주자가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한 경우), 제 7-13조제4호<sup>1)</sup>, 제7-16조(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제7-17조제 9호<sup>2)</sup>, 제7-45조제11호<sup>3)</sup> 및 제18호단서<sup>4)</sup>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취득한 원화자금의 대외지급. 다만, 재외동포가 제2-6조 또는 제7-45조제 18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원화자금을 대외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4-7조의 규정에 따른다.
- 1)제7-13조제4호 국민인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금전의 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 2)제7-17조제9호 국민인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에 다른 거주자를 위하여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채무의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
- 3)제7-45조제11호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일부 기타자본거래경우
- 4)제 7-45조제 18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부동산을 임차하여 내국통화로 보증금 지급하는 경우
- 마. 규정제2-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비거주자에 대한 매각)의 범위를 초과하여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4 지급등의 절차·방법 관련 위규 사례

#### 【사례 ①】 현지법인의 단기 운영자금 분산송금

#### (위규 내역)

(주)○○의 대표이사 김××은 2010.2월 카자흐스탄에 자본금 1불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2010.5월~7월중 회사 임직원 10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현지법인의 단기 운영자금 50만불을 증여성으로 분산송금

#### (유의사항)

- 거래당사자는 실지 명의로 송금을 하여야 하며, 타인에 증여성으로 송금 하는 경우 신고절차를 준수할 필요
- 외국환은행은 증여성 송금의 **수취인이 해외법인**인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타 목적의 송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
- 차명에 의한 분산송금임을 인지한 경우 편법송금에 대한 경고
- 혐의거래 보고등 동 거래에 대한 후속조치

#### (체크포인트)

- ◇ 위규사례 발생예방을 위한 업무전산화 등 제도적 개선점이 없는가 (거주자의 해외 법인앞 증여성 송금시 송금사유 재확인)
- ☆ 현지법인에 대한 증여성 송금신청을 받은 경우 현지법인의 주주명부를 확인하여 송금인과의 관계 확인
- ◇ 증여성 송금의 수취인이 현지법인인 경우 기타 자본거래(금전대차, 해외직접투자 등)일 가능성에 유의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제4-3조

#### 【사례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

## (위규 내역)

(주)○○는 A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 대부투자 방식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말레이시아소재 현지법인에 50만불을 송금하였으나 2010.11월 동 대여금액을 B은행을 통해 회수함

#### (유의사항)

거래당사자는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등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 관련된 자금의 입출금도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거래를 하여야 하며,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등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는 거래와 관련된 자금이 입금된 경우 자행이 거래주체의 거래외국 환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자행이 지정거 래외국환은행이 아닐 경우에는 타행앞 관련신고가 이루어진 거래라고 하더라도 지급처리할 수 없음

#### (체크포인트)

- ◇ 외화자금 입금시 동 자금의 입금 사유를 반드시 확인
- ◇ 거래은행을 지정해야하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경우 반드시 자행이 지정거래외국화은행인지 확인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 【사례 ③】 유효기간 경과 후 해외이주비 지급

### (위규 내역)

해외이주예정자 유OO은 2006.3월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교부받고, 2009.12월 ××은행을 통해 100만불을 미국으로 송금

### (유의사항)

해외이주비는 해외이주자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하므로 해외이주자 인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자 자격을 갱신한 후 송금해야 함

### (체크포인트)

- ◇ 해외이주비 지급시점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가
- ◇ 해외이주비 송금신청액이 10만불 이상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자금출처확인서 징구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 【사례 ④】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를 이용한 부동산 처분대금 송금

### (위규 내역)

미국시민권자 이OO(1995년 미국국적 취득)은 2001.4월 20만불을 국내로 송금하여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임대운영하다 2010.4월 동 아파트를 처분한 후 처분대금을 미국으로 전액 송금

#### (유의사항)

재외동포가 외국국적 취득시점 이후에 취득한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여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재산반출 절차에 따른 외화송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 이 경우는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시점에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앞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제재기관의 행정처분 등 이후 해외 송금이 가능
  - \* 휴대수입 또는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할 경우 외국환은행장, 기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임

# (체크포인트)

- ◇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인의 외국국적 취득시점 확인
- ◇ 국내부동산 취득시점이 외국국적 취득이전인가
- ◇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의 자금출처확인서 징구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제9-39조

#### 【사례 ⑤】 제3자 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 (위규 내역)

수산물 가공업체인 (주)××수산은 중국소재 수산물업체인 A사로부터 바지락을 수입하고, 동 수입대금(10만불) 중 일부(5만불)는 A사와 거래관계인 홍콩소재 B사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직접 달러로 지급

#### (유의사항)

거래당사자가 수입대금지급을 위하여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송금신청서상의 수취인과 증빙서류의 정당 수취인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3자 지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외국환은행은 수입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 신고절차(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를 확인

#### (체크포인트)

- ◇ 고객의 해외송금 신청시 송금사유 확인
- ◇ 수입대금 지급의 경우 송금수취인과 수출상이 일치하는가
- ◇ 수입대금 지급금액과 수입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타 방법에 의한 지급(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 해당여부 확인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5-11조

#### 【사례 ⑥】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누락

# (위규 내역)

미국 현지법인인 U사는 2010.7월 국내은행으로부터 원화를 차입한 후 동 자금을 환전하여 동사의 해외계좌로 송금

#### (유의사항)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라 원인이 되는 거래에 대하여 신고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에 대한 신고대상거래인지 확인하여 '대외지급수단매 매신고'등의 절차 필요

#### (체크포인트)

- ◇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대상인지 확인 (비거주자의 거래에 주의)
- ◇ 신고대상거래인 경우 외화송금 전 한국은행총재앞 신고의무를 이행 했는지 확인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 III 자본거래 신고 및 관련 위규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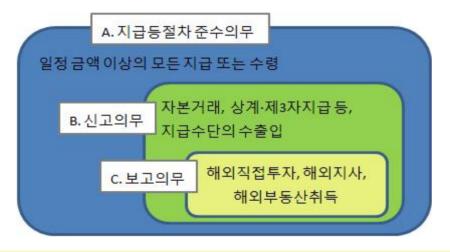
# 1 까본거래 총칙

- □ 외국환거래법규는 지급등(지급 또는 수령)의 사유와 금액에 따라 지급등절차 준수의무, 신고의무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지급등절차 준수의무는 일정 금액(지급은 미화 1천불, 수령은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모든 지급 또는 수령에 적용되는 반면

신고의무는 ① 지급등의 방법이 상계, 제3자지급 등인 경우, ② 지급등의 사유가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③ 지급수단 (원화·외화)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또한 직접투자등(해외직접투자, 지사설치, 해외부동산취득)의 경우 신고의무와 별도로 보고의무(사후관리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 < 지급등절차, 신고의무 및 보고의무의 관계 >



\* 외환거래시에는 ① B(신고의무) → ② A(지급절차준수의무) → ③ C(보고의무)의 순서로 각 의무의 해당 여부를 판단

- □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거래 중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됨(규정 §7-2)
  - 1.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신고등을 한 거래(다만, 신고인이 정해진 경우 해당 신고인이 신고등을 한 거래)
  - 2. 제7-4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가 자금통합관리를 위하여 미화 3천만불 이 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비거주자와 행하는 해외예금, 금전대차, 담 보제공거래 및 외국환은행에 대한 담보제공
  - 3. <u>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지급등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미화 1천불 이</u> 내인 경우
  - 4. <u>자본거래로서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1천불</u> <u>초과 5만불 이내이고,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제4-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금액을</u> <u>초과하지 않는 경우(다만, 지급시 제4-3조제3항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u> 부터 거래의 내용을 확인받아야 함)
  - 5. <u>자본거래로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수령금액이 미화 1천불 초과 5만불 이내이고,</u> 연간 수령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제4-3조의 절차에 따라 수령하여야 함)

#### □ 자본거래의 내신고수리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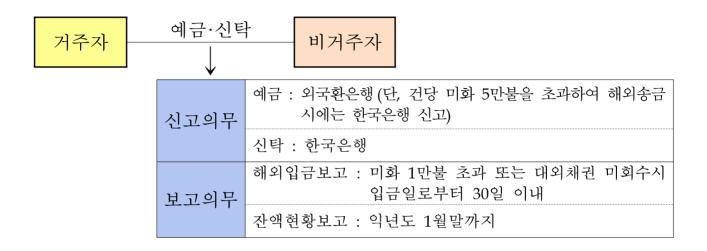
- 자본거래의 신고수리기관은 내신고수리를 하여 일정기간의 준비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신고수리를 할 수 있음
  - \*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이란 당사자간의 합의, 예약, 가계약 등 이후 본계약 체결 전까지의 기간으로서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주의사항

- □ 규정 제8장(현지금융) 및 제9장(직접투자 및 부동산취득)의 규정은 제7장(자본 거래)에 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바, 어떤 거래 또는 행위가 현지금융·직접 투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 신고면제사유를 비롯 제7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 따라서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미화 5만불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분율이 해당 외국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10% 이상인 때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2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거래

### (1) 해외예금



### □ 신고의무(규정 §7-11②)

- 해외예금 :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만, 거주자(기관투자가,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USD 5백만 이상인 자, 해외건설업자 등 제외)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한국 은행총재에게 신고
- 해외신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 보고의무(해외예금의 경우에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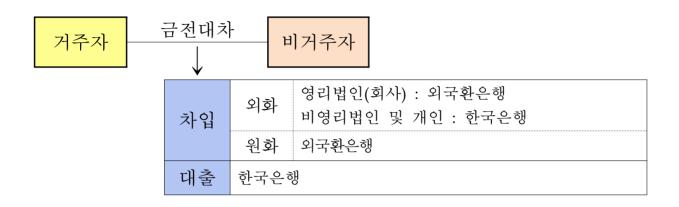
- 해외에서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또는 대외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입금한 경우 입금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외입금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화은행장에게 제출
- 연간입금액 또는 연말잔액이 일정 금액<sup>\*</sup>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도 1월말까지 잔액현황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
  - \* 연간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미화 10만불(법인은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 신고면제사유(규정 §7-11①)

- 1.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가 외화예금 또는 외화신탁거래를 하는 경우
- 2. 거주자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이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 부터의 외화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 3.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 4. 국민인 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외화 예금 또는 외화신탁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 5. 거주자가 외국에서의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 6. <u>거주자가 증권투자,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와 관련하여 외화예금</u> 거래를 하는 경우
- 7. 예탁결제원이 거주자가 취득한 외화증권을 외국 소재 증권예탁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예탁·보관하고 동 예탁·보관증권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 8.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외화예금 및 외화신탁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 9.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CLS은행 또는 외환동시결제 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복수통화(원화 포함)예금 또는 원화예금을 하는 경우
- 10.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거나 이미 취득한 거주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당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 11.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7-45조제1항제16호 및 제7-4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 12. 외화예금신고를 한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해외에서 취득한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 13. 규정 제7-14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 3 금전대차 및 채무보증

# 가. 금전대차



# □ 신고의무(규정 §7-14)

####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 다만, 미화 3천만불(최근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을 초과 하여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재부 장관에게 신고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에게 신고

#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 차입)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다만, 10억원(최근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 포함)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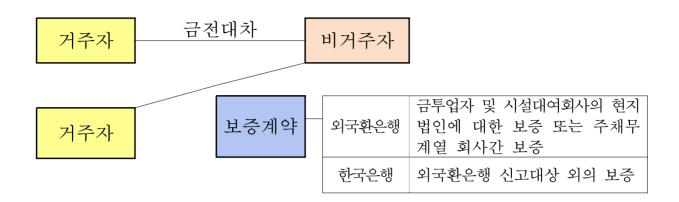
###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및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함

# □ **신고면제사유**(규정 §7-13)

- 1.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2.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차관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공 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 3.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4. <u>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u> 금전의 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 5. 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근무자, 그 동거가족 또는 해외체재자가 그 체재함에 필요한 생활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비거주자와 금전의 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 6. 국제유가증권결제기구에 가입한 거주자가 유가증권거래 결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자 로부터 일중대출(intra-day credit) 또는 일일대출(over-night credit)을 받는 경우
- 7. 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9-39조제2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8.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으로 부터 CLS은행이 정한 일정 한도의 원화 지급포지션을 받거나 비거주자에게 일중 (Intra-day) 원화신용공여 또는 일일(Over-night) 원화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9.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 회원은행으로 부터 일중(Intra-day) 또는 일일(Over-night) 원화신용공여를 받는 경우

# 나. 채무보증



### □ 신고의무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무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규정 §7-18)
  - 국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그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 \* 다만, 보증금액은 그 현지법인에 대한 거주자의 출자금액의 300% 이내
  -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인정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재를 외국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하는 경우
  - 국내에 본점을 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시설대여회사 현지 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

- 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장기(1년 초과) 외화 자금차입계약과 관련하여 동 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제공자가 차입자의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
- 신고면제사유 및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채권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채무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규정 §7-19)

# □ 신고면제사유(규정 §7-17)

- 1. 거주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거주자가 외화보증을 하는 경우
- 2. 거주자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수입업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역외금융 대출을 받음에 있어 당해 거주자가 그 역외금융대출에 대하여 당해 외국환 은행에 외화보증을 하는 경우
- 3. 국내에 본점을 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에 대한 외국환 은행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해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 내에서 외화보증을 하는 경우
- 4. <u>거주자가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거래를 함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u>받는 경우
- 5. 거주자가 다음의 보증을 하는 경우
  - 가. 거주자의 원화·외화자금차입 계약에 관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다만, 제7-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외화자금차입계약에 관하여 동 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나. 거주자가 규정 제4장에서 규정한 지급(제4-5조 내지 제4-7조 제외)을 위한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 다. 거주자가 인정된 임차계약을 함에 따라 국내의 다른 거주자가 외화보증을 하거나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의 시설대여회사 국내의 실수요자간의 인정된 시설대여계약에 대하여 외화보증을 하는 경우
  - 라. 거주자의 약속어음매각과 관련하여 당해 거주자의 계열기업이 외화보증을 하는 경우

- 마. 규정 제2-6조제1항단서에 따라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고 외국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거주자가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6. <u>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용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보증을</u> 하는 경우
- 7. 거주자의 수출,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등 외화획득을 위한 국제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 등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8. 거주자 제7-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자금 의 지급에 갈음하여 비거주자가 지급 또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지급 또는 보 증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당해 거주 자의 계열기업이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9.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다른 거주자를 위하여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채무의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
- 10. 제7-45조제1항제16호 및 제7-48조제1항제6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금융회사가 비거주자에게 보증하는 경우
- 11.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수출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을 포함한다)와 보증등을 하는 경우
- 12. 제7-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

# 4 증권 발행 및 취득

# 가. 증권발행(모집)

□ 신고의무(규정 §7-22 및 §7-23)

# (거주자의 증권발행)

-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 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비거주자의 증권발행)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 또는 원화증권(원화연계외화증 권 포함)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원화연계외화증권 포함)을 발 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거주자의 증권발행			비거주자의 증권발행		
발행장소	통화	신고 여부	발행장소	통화	신고 여부
국내	원화	적용 대상 아님	국내	원화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외화	신고 예외		외화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외국	원화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외국	원화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외화	외국환은행장 등에 신고 (거주자의 외화차입 준용)		외화	적용 대상 아님

국내증권시장과 해외증권시장간에 증권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증권상장 → 최초 상장시점 1회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나. 증권취득



#### ※ 주의사항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증권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신고사항에 해당하나,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취득할 경우 신고의무 면제
- 거주자간의 (외화)증권양수도는 규정 \$7-43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나,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양수인 모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1) 거주자의 증권취득

※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로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정 §9-1 내지 §9-9에 의함

# □ 신고의무(규정 §7-31②)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단, 거주자가 보유증권을 대가로 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환대상증권의 가격 적정성을 입증하여야 함

### □ 보고의무(규정 §7-31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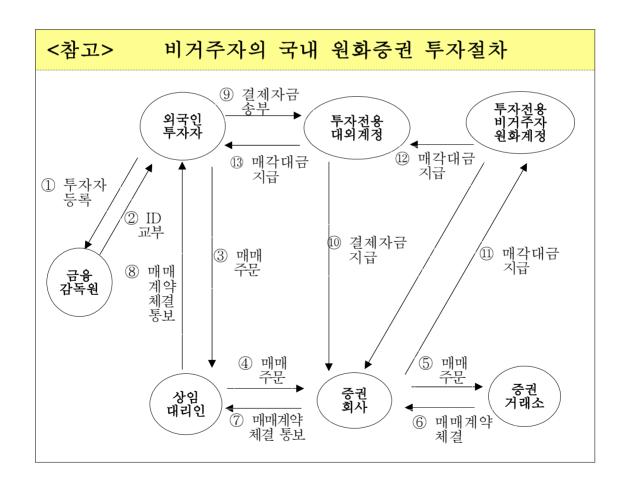
증권을 취득한 거주자는 증권보유현황을 다음 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함

# □ 신고면제사유(규정 §7-31①)

- 1.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 유증 · 증여로 인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3.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의 만기전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4. <u>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신하여 합병 후 존속·</u> 신설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 5.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6. 거주자가 국민인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내국통화로 취득하는 경우
- 7.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부금의 대물변제, 담보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8.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한 만기 1년 이상인 원화증권을 취득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해외판매채권을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국내인수회사가 취득하는 경우
- 9. 국내기업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외국기업과의 거래관계의 유지 또는 원활화를 위하여 미화 5만불 이하의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10.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국내자회사를 포함한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은행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가 본사(본사의 지주 회사나 방계회사 포함)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11. 거주자가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부여된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12. 제7-3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11호, 제7-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증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2)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 □ 신고의무(규정 §7-32②,③)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비상장 국내원화증권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 가령. 거주자가 비상장 국내원화증권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 ※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의 경우 별도의 보고의무는 부과되지 않음



# □ **신고면제사유**(규정 §7-32①)

- 1.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2. <u>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비거주자가</u>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3.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 · 유증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4. 비거주자가 국내법령에 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 5.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의 주식을 비거주자가 당해 거주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 6. 비거주자가 제2-5조, 제2-10조 및 제7-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취득하거나 부여된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하는 경우
- 7. 국민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8. 국내에서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한 비거주자가 당초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바에 따라 만기전 상환 등을 위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비거주자가 주식예탁증서의 원주를 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또는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되는 해외판매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한 국내 인수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 9. <u>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부금의 대물변제, 담보권의 행사와 관련하여</u>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10. 비거주자가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11. 제7-31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 제7-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권을 취득한 거주자로부터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5 기타 까본거래

# 가. 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 □ 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의 적용범위

- 거주자간의 외화표시 임대차계약·담보·보증·보험\*·조합· 사용대차·채무인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 생등에 관한 거래
  -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
- 거주자간의 상속 · 유증 · 증여에 따른 외화표시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 ㅇ 거주자간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 \* 단,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제9장의 규정에 따름

### □ 신고의무

- ㅇ 원칙적으로 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는 신고의무가 면제됨
- 다만, 담보·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는 채무보증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기타 자본거래의 적용범위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담보·보증·보험·조합· 사용대차·채무인수·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 주의사항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는 제외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
  - 담보 및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채 무보증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비거주자가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보증 계약에 관한 규정 및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로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장을 적용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상속 · 유증 · 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 거주자가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 · 운영 등과 관련 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 ㅇ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위

# □ 신고의무(규정 §7-46①)

- ㅇ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 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체결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 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조 건으로 외국통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규정 §7-46②)
  -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 및 신고면제사유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기타 자본거래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다만, 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 포함)가 원화증권 및 원화 연계외화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동일인당 500억원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통합관리 개시전에 신고하여야 함

### □ 보고의무(규정 §7-46④,⑤)

-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 ·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위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거 주자는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 · 운영 등과 관련된 자금운영 현황 등을 다음 연도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 하여야 함
- 자금통합관리 신고를 한 자는 그 운영현황을 매분기별로 익월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함

### □ 신고면제사유(규정 §7-45①)

- 1.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2.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거래
- 3. 거주자가 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장을 그 신용장 조건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4.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항공기엔진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주요부품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를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조건으로 외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5. 거주자가 제9장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아 취득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취득신고수리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외국 통화표시 임대를 하는 경우
- 6.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이외의 물품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 7. 비거주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의 원리금 송금이 허용되는 예금· 신탁·증권 등을 금융기관의 자기여신에 관련된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 3자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8. 비거주자가 국내에서의 법적절차를 위해 필요한 예치금을 납입하거나 예치금에 갈음하여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을 제공하는 경우
- 9.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국내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통화표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에 있는 보험사 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0.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1. 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제7-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 유증 · 증여에 의한 채권의 발생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13. 국제유가증권결제기구에 가입한 거주자가 제7-13조제6호의 일중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14. 기관투자가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보유한 외화증권을 외국증권대여기 관 (Securities Lending Agent)을 통하여 대여하는 경우
- 15. 제7-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차계약 만료 전에

수출자유지역내에서 당해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 처분하는 경우

- 16.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원화 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차입 · 대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화증권, 외화증권 또는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다만, 거주자가 대여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동일인당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17.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거주자의 보증 · 담보제공이 수반된 현지금융을 상환하기 위하여 제5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증 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현지법인을 위하여 당해 거주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18.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다만, 임차보증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내국통화에 한함
- 19.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거주자 회원은행이 CLS 은행과 결제관련 약정(손실부담약정 포함)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 20.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와 결제관련 약정(손실부담에 관한 합의 포함)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 21. 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 22. 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만, 당해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여야 함
- 23.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 · 유증을 받는 경우
- 24. 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또는 외국정부에 대해 의연금, 기부금을 지급 하는 경우

### 다.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 □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의 적용범위

비거주자간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 리를 취득하는 경우

#### □ 신고의무(규정 §7-48②)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47조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 신고면제사유(규정 §7-48①)

- 1.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이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 거래(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 수표의 매매를 포함)를 하는 경우
- 2.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표시거래(자본거래 포함)를 하는 경우
- 3.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 체재함에 수반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 다른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거래를 하거나 비거 주자가 대한민국내에서 허용되는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른 비거주 자와 내국통화표시거래를 하는 경우
- 4.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5. 비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내국통화표시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 6. 비거주자간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인정된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원화증권을 차입 · 대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화증권 또는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7.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제7장제6절제3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8. 외국금융기관 및 외국환전영업자가 비거주자와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 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의 매매를 하는 경우
- 9. 비거주자간 상속 · 유증에 따른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10. 비거주자간 해외에서 행하는 내국통화표시 파생상품거래로서 결제 차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 11.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 자간의 원화가 개재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 가. CLS은행과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 또는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다른 비거주자간의 결제관련 약정
  - 나.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으로부터 CLS 은행이 정한 일정 한도의 원화 지급포지션(Short Position)을 받거나 고객인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회원은행으로부터 일중(Intra-day) 또는 일일(Over-night) 원화신용공여를 받는 거래
  - 다.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의 결제유동성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In/Out Swap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 라. 유동성공급약정에 따른 CLS은행과 비거주자(Liquidity Provider)간의 현물환, 선물환 또는 스왑거래
  - 마.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가 CLS은행 또는 회원은행으로부터 당초 약정한 통화와 다른 통화로 수령하는 거래
  - 바. CLS은행과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의 손실부담 약정 체결
  - 사.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고객인 비거주자와의 손실 부담에 관한 합의
- 12. 비거주자가 외국으로의 원리금 송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 및 원화신탁을 다른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6 자본거래 신고 관련 위규 사례

# 해외예금 관련 위규사례

#### 【사례】 해외예금 미신고

#### (위규 내역)

탁○○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D Bank)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01년 ~ '08년까지 NOK7천크로네, USD160만달러(합계 30억원 상당)의 해외예금거래를 하였음

#### (유의 사항)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거래를 제외하고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또한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화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해외예금계좌가 신고예외거래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된 예금계좌로부터 수령시 지정거래외국 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체크포인트)

- ◇ 해외예금계좌로의 송금시 신고여부 및 지정외국환은행 여부
- ◇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는 자는 해외입금보고서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잔액현황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함
- ◇ 해외예금계좌 미신고시 국내로 지급신청한 경우 제재보고 후 일정 기간동안 지급이 제한됨을 안내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7-12조

# 금전대차 관련 위규사례

#### 【사례 ①】 외화자금 차입시 수령사유 허위보고

# (위규 내역)

(주)OO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011.4월 일본소재 거래업체인 A사로부터 외화자금 1,000만엔을 차입하면서 물품결제대금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인 (주)△△는 2010.7월 미국소재 모(母)회사로부터 만기 10개월의 단기외화자금 15만불을 차입하면서 4회에 걸쳐 증여성 송금으로, 소명 후 수취

#### (유의 사항)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본사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본사와 지사간에 작성된 금전대차계약에 의거 외화자금 차입신고를 하여야 함

외국환은행은 해외로부터 송금된 자금을 고객이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령자금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신고 등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자금의 수령인 경우에는 지급하기 전 제재기관장에게 위반사실을 보고

### (체크포인트)

- ◇ 수출대가 수령의 경우 수출입관련서류 확인
- 대규모 자금이 증여성으로 송금되는 사례는 많지 않으므로 송금사유 재차 확인 및 신고의무가 있는 거래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추후 반대거래(차입금상환 등)가 제한됨을 안내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 【사례 ②】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금을 국내지사 운영경비로 수령

#### (위규 내역)

2011.3월 국내법인 (주)△△Korea는 일본법인 (주)△△Japan으로부터 10만불을 차입하였으나 외국환은행은 이를 국내지사 운영경비로 판단하여 관련자금을 지급(두 법인의 상호가 유사하여 외국환은행 담당자가 일본기업의 국내지사로 오인)

### (유의 사항)

외국환은행은 국내 법인의 영업형태, 설립내용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급등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수취인이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국내지사 운영경비로 소명할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

# (체크포인트)

- ◇ 국내 수취인의 영업내용, 송금인 명의 등을 고려하여 당해 송금 건이 고객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
- ◇ 관련 증빙 또는 신고여부 등을 확인후 지급 또는 수령거래 처리

관련 규정:「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7-48조

#### 【사례 ③】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자금 차입

#### (위규 내역)

중소기업인 (주)△△은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 2010.12월 비거주자 갑 (미국교포)으로부터 갑의 OO은행 ××지점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10억원을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차입

#### (업무처리시 유의점)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자가 외화자금이 아닌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차입누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은행은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자자유원계정" 인출을 요청할 경우 사용용도가 인정된 거래(경상거래 대가 수수 등)인지를 확인하고 거주자와 금전대차거래를 위한 인출인 경우에는 거주자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토록 안내

### (체크포인트)

- ◇ "비거주자자자유원계정" 처분용도중 인정된 거래항목 숙지
- ◇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인출된 자금의 지급사유가 신고대상 거래인지 확인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7-9조, 제7-15조

### 【사례 ④】 증빙없는 지급신고를 통한 외화 대출

### (위규 내역)

국내에 거주하는 김××은 미국에 거주하는 동생 김○○(2005.1월 미국 국적 취득)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 위하여 2010.9월 외국환은행장에 증여성 지급으로 5만불을 송금

#### (유의 사항)

외국환은행은 송금시 송금사유, 송금인과 수취인의 관계 및 향후 상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증여성으로 송금한 자금이 금전대차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향후 원리금이 국내로 송금되었을 때 감독기관의 제재 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체크포인트)

- ◇ 고객의 해외송금 신청시 송금사유 확인
- ◇ 송금사유 확인결과 신고절차가 필요한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안내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 【사례 ⑤】 금전대차계약 만기 연장신고 누락

#### (위규 내역)

국내법인 (주)△△은 2009.2월 베트남소재 비거주자 ABC와 만기 1년인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0만달러를 차입하였으나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만기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기 체결한 계약의 만기를 2011.2월로 연장

#### (유의 사항)

거래당사자는 비거주자와 최초 금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더라도 만기 연장전에 신고기관에 연장신고를 다시 하여야 함

외국환은행은 금전대차거래 신고자에게 금전대차거래의 **내용변경**은 **사전신고사항**이며 만기연장, 금리변경 등 최초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동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차입금 상환이 제한됨을 안내

### (체크포인트)

- ◇ 금전대차계약 내용의 변경은 사전신고사항임을 충분히 안내
- 금전대차계약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제재기관의 제재 후 사후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안내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 증권발행 및 취득 관련 위규사례

#### 【사례 ①】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1)

#### (위규 내역)

계열사인 (주)OO, (주)△△ 및 (주)□□ 등 3개사는 2010.4월~11월중 각각 200만~400만불, 총 800만불을 중국소재 현지법인에 투자(투자 지분은 모두 10%미만)하는 내용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개별적으로 각각 외국환은행에 신고

#### (유의 사항)

거래당사자는 해외투자건의 투자지분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및 10% 미만이더라도 공동투자한 경우 최다출자자(10%이상)가 해외직접투자신고시 연명신고를 하여야 함

연명신고를 하지 않고 각각이 10% 미만의 개별투자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앞 외화증권취득 신고를 하여야 함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신고과정에서 개별 투자건이 10%이상 지분취득 등 해외직접투자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각 투자지분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외화증권취득거래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임을 안내

\* 거주자가 해외 법인의 주식 등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10%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경영권행사 또는 일정한 경제관계(기술개발계약, 장기 원자재공급계약 등) 수립을 위한 경우라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

### (체크포인트)

- ◇ 2인 이상의 공동 투자로써 총 투자비율 합계가 10%이상인 경우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거주자가 연명으로 해외직접투자로 신고할 수 있으나, 합계가 10%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외화증권 취득으로 신고
- ◇ 현지법인에 대한 거주자의 총 지분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연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별로 각각 관리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 【사례 ②】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2)

### (위규 내역)

친인척 관계인 A, B, C 등 3인은 외국환은행에 연명으로 해외직접 투자 신고를 하고 2011.1월~3월중 30만불을 송금하여 중국소재 ×× 유한공사의 지분을 각각 3%씩 취득

#### (유의 사항)

거래당사자들이 연명투자를 하는 경우 전체 투자지분의 합계가 10% 이상되어야 하며, 10% 미만인 경우 외화증권취득으로 한국은행총재앞 신고사항임을 인지하여야 함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연명 신고수리 심사과정에서 당해 건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전체 투자지분 합계 10%이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화증권 취득거래로써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임을 안내

### (체크포인트)

- ◇ 2인 이상의 공동 투자로써 총투자지분율의 합계가 10%이상인 경우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거주자가 연명으로 해외직접투자로 신고하고 합계가 10%미만인 경우 외화증권 취득으로 각각 신고
- ◇ 해외직접투자 요건(지분비율 10%이상 등) 숙지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 【사례 ③】 기술용역대가를 현금으로 회수하지 않고 주식으로 취득

# (위규 내역)

(주)△△은 2010.5월 담요판매업을 영위하는 미국소재 비상장법인 E사에 미국내 담요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25만불을 수취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15만불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10만불 상당의 E사 주식 5천주(지분율 7%)으로 지급받음

#### (유의 사항)

거주자가 용역제공 등의 대가를 회수할 때 용역계약서 등에 의거 적 정하게 회수하여야 함

외국환은행은 용역계약서 등을 통해 수령자금이 적정하게 회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전 신고없이 용역대가의 일부로 외화증권 등을 취득한 경우 감독기관제재 등 적법절차를 안내

#### (체크포인트)

- ◇ 물품매매, 용역대가의 수령(지급) 금액이 약정된 금액인가
- ◇ 용역대가 등의 일부 미회수시 사유 확인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 【사례 ④】 증빙없는 수령방식을 통한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취득

### (위규 내역)

일본소재 반도체제조업체인 A사는 2010.7월 제조업체인 (주)△△의 대표이사 김OO로부터 (주)△△의 주식 8,000주(8%)를 10만불에 취득하기로 하고 동 취득자금을 (주)△△앞으로 3회에 걸쳐 증여성 송금

#### (유의 사항)

외국환은행장은 해외에서 송금된 자금을 국내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송금사유를 확인하되 기업간 증여성 송금은 사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간 증빙없는 송금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확인 필요

#### (체크포인트)

- ◇ 위규사례 발생예방을 위한 업무전산화 등 제도적 개선점이 없는가
- 기업간 증빙없는 수령의 경우 송금사유 정당여부를 재확인하여기타 자본거래(금전대차, 증권 취득 등) 가능성에 유의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 기타 자본거래 관련 위규사례

#### 【사례 ①】 비거주자와의 물품 임대차거래

#### (위규 내역)

의류제조업체인 (주)○○은 2009.12월 베트남소재 A사로부터 300천불 상당의 재봉기계를 구입한 후 이를 2010.1월 베트남소재 거래업체인 B사에 임대하고 매월 국내로 송금되는 임대료를 수취

#### (유의 사항)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 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3천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임

외국환은행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익금 등을 고객에게 지급할 경우 관련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자금을 지급하기 전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에 보고

# (체크포인트)

- ◇ 임대수익금 등을 지급할 경우 관련 증빙 또는 신고여부 등을 확인
- ◇ 해외로부터 주기적인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령사유 재차 확인

관련 규정:「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7-46조

## 【사례 ②】 비거주자와의 골프카트 임대차 계약

# (위규 내역)

골프장을 경영하는 (주)○○은 2010.4월 중국소재 현지법인인 △△유한 공사과 골프카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은 매월 국내로 송금되는 카트임대료를 수취함

## (유의 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임대차계약체결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한 현지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은행을 통한 자금의 이동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자본거래 신고의무가 있음

## (체크포인트)

- ◇ 비거주자와 체결한 채권채무발생등의 계약과 관련된 자금을 송금할 경우 사전 신고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확인
- ◇ 해외로부터 주기적인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령사유 확인

관련 규정:「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7-46조

# 해외투자 신고 및 관련 위규사례

#### 

## □ 직접투자등과 자본거래의 관계

- 직접투자등이란 ① 해외직접투자, ② 해외지사 설치 및 ③ 해외 부동산 취득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자본거래의 특수한 형태에 해당
  - \* 규정 제9장(직접투자등)은 규정 제7장(자본거래)의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바, 해당 거래가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규정 제9장이 우선 적용됨

해외직접 투자	거주자의 외화증권 취득 중 그 보유지분율이 해당 외국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 이상인 경우 등 경영참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해외지사 설치	거래 실질은 해외직접투자와 유사하나 그 투자방식이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 못하는 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외직접투자와 구별됨
해외부동산 취득	본래 자본거래(규정 제7장)에 속하였으나, 2007.12월 이후 직접투자(규정 제9장)의 하나로 규율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장기간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구별됨

# □ 자본거래와 직접투자등의 규율상의 차이점

## ○ 신고의무의 확대

- 거주자간의 외화증권 매매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나(규정 §7-43), 해외직접투자자가 자신이 보유중인 현지법인의 지분을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고의무 발생
- \* 양도인인 거주자는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양수인인 거주자는 신규 해외 직접투자 신고
-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한 현지법인이 해외에 자회사 또는 손회사(외국법인)를 설립하는 경우 그것이 비거주자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신고의무(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가 부과됨
- \* 현지법인과 그 자(손)회사를 일체로(연결재무재표 기준) 파악할 때 현지 법인의 자(손)회사 설립을 해외직접투자의 내용 변경으로 간주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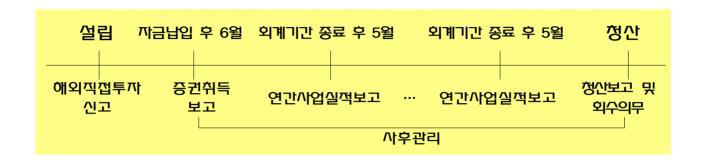
## ○ 신고면제사유의 축소

-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내의 자본거래는 신고의무가 면제되나, 그 거래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가 발생

# ○ 보고의무의 부과

- 직접투자등에는 보고의무 및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의무가 부과되어 정기적으로 투자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2 해외직접투자



# 가.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영 제8조)

- □ 해외직접투자란 '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 외국법인(설립 중법인 포함)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함
  - **증권취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지분투자)
    -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 경영참가의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이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의 관계를 수립한 때
      - ☑ 임원의 파견
      -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 이미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행위

- **금전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
  - 이미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장기(1년 이상) 금전대여
  - \* 현지법인에 대한 단기(1년 미만) 금전대여는 규정 §7-16에 따른 한국 은행총재 앞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출 신고사항에 해당

#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8조)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 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 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 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ol> <li>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li> <li>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li> <li>가. 임원의 파견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li> </ol>
	<ol> <li>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li> </ol>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b>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b> 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 나. 신고의무

- □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규정 §9-5①)
  -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의무(규정 §9-5②)
  -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이미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Tip(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 투자내용의 변경
  - 현지법인의 자회사·손회사 설립
  - 현지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자의 지분율 변동
  - 대부투자신고 후 1년 이내 자금회수
    - \* 해외직접투자자의 회생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내용변경신고로 처리
- 투자주체의 변경
  - 거주자간 해외투자법인에 대한 지분 양수도를 하는 경우 양수인(신규)· 양도인(변경) 모두 신고하여야 함
- 현지법인의 자본증감에 따른 신고의무

유상	주주배정	규정 §9-5①에 따른 신규 해외직접투자 신고		
증자	제3자배정	규정 §9-5②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투자자금의 변동 없이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만 변동)		
무상	자본전입 (잉여금→자본)	규정 §9-5①에 따른 신규 해외직접투자 신고		
증자	출자전환 (부채→자본)	규정 §9-5②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기타	주식병합, 주식분할, 감자, 자산재평가 등 : 변경신고사항			

# 다. 사후관리의무 및 보고의무

# □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의무(규정 §9-7)

 외국환은행장은 신고를 받은 해외직접투자사업에 대하여 해외 직접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신고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 해외직접투자자의 보고의무(규정 §9-9)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의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고서	제출기한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송금(투자)보고서	송금 또는 투자 즉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청산보고서	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금회수 후 즉시				

## □ 사후관리 및 보고서 등의 제출 면제사유

-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 ·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이 인정하는 경우(수출입은행장에게 보고)
- 개인투자자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투자금 회수, 청산보고, 사후관리 등도 면제)

# 라. 청산 및 투자금 회수의무

- □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 현지법인을 청산한 경우 투자원금 및 과실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이를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다만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신고절차 준수 필요

# 2-1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 역외금융회사의 개념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회사 및 계약형태 포함)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

#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ㅇ 해외직접투자에 준하는 투자
- 총투자금액(부채성증권 매입 등)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 이상인 경우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 나. 신고의무

-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규정 §9-15의2)
  - 거주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거주자의 현지법인등(현지법인 및 그 자회사, 손회사 또는 해외 지점)이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변경(폐지)신고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 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 보고의무

## □ 분기별 투자현황 보고의무(규정 §9-15의2⑤)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는 매분기별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다음 분기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3 해외지사 설치

# 가. 신고의무(규정 §9-18)

□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해외	가. <b>과거 1년간</b> 의 외화획득실적이 <b>미화 1백만불 이상</b> 인 자
	나.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
기점	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가. 공공기관
	나. 금융감독원
	다.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b>미화 30만불 이상</b> 인 자
	라.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마. 다목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실적에 미달하는 자로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
	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해외	바.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
	사. 중소기업협동조합
사무소	아. 국내의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
	자. 기술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차.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
	과한 자
	카.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비영리단체를 포함한다)

# < 참고 >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의 구분

◇ 해외지점 :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

◇ 해외시무소 :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을 수행

# 나. 해외지사의 운영

## □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규정 §9-19)

-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그 해외지점에 영업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
  - \* 해외지점의 설치비 · 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 함하나, 현지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은 제외
-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영업기금을 초과하여 영업기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 □ 해외사무소의 경비(규정 §9-20)

- 해외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
- 해외사무소의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설치비의 정산 결과 미사용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총액에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함

## 다.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및 결산보고

## □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규정 §9-22)

- 해외지점이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 \*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동산 거래는 제외
  - 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 \* 단,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주재국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주재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즉시 환금이 가능하며 시장성이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 제외
  - 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

## □ 해외지점의 결산보고(규정 §9-23)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각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한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6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결산이익금의 처분은 ①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② 국내회수 후 외국환은행에 원화로 대가로 매각하거나 거주자계정에의 예치, 또는 ③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 운용하여야 함

# 라. 해외지사 설치에 대한 사후관리

- □ 해외지사의 설치완료 및 영업활동 보고 등(규정 §9-25)
  - 해외지사 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기관의 장에게 설치행위의 완료내용을 보고
  - 해외지사가 부동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그 취득 또는 처분일 부터 6월 이내에 신고기관의 장에게 그 취득·처분내용을 보고
  - 해외지사의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 세표를 포함한다)을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기 관의 장에게 제출

# □ 해외지사의 변경 및 폐쇄(규정 §9-24)

- 해외지사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자는 변경 후 3개월 이
   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사후보고
- 해외지사 폐쇄시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당해 해외 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증명 서류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
  - 단,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4 부동산 취득



## 가.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 (1) 신고의무

- □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규정 §9-39②)
    -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거주자 본인(배우자 포함)이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규정 §9-39④)
    - 외국환은행장 신고수리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에서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

#### 내신고수리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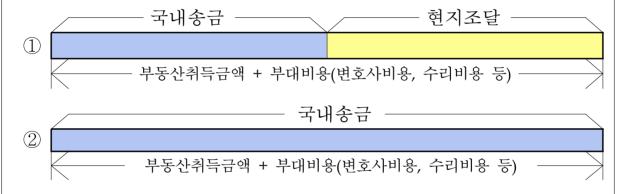
- 해외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내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예정금액의 100분의 10이내(최대 미화 10만불)에서 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수리를 받거나 혹은 그 투자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 변경신고의무

해외부동산취득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Mortgage Loan

- 아래 ①과 같이 부동산취득금액에 일부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현지의 금융기관(비거주자)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계약(자본거래) 신고의무는 면제됨(규정 §7-13)
  - 다만, 해외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에 현지조달액 및 현지금융기관 등을 기재하여야 함



- 해외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 제출 후 현지조달액이 감액 등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해외부동산취득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해외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 제출 후 해외에서 체재하는 동안 생활비 등의 사용 목적으로 해당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액을 증액한 경우 이는 신고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한국은행총재 앞 비거주자와의 금전 대차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2) 신고수리요건(규정 §9-38)

- □ 신용불량자, 조세체납자,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 등이 아닐 것
- □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 일 것
- □ 부동산 취득이 해외사업활동 및 거주목적 등 실제 사용목적에 적합할 것

# (3) 보고의무 및 회수의무

□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다음의 보고서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고서	제출기한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부동산 취득 후 3월 이내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부동산 처분(변경) 후 3월 이내
수시보고서	신고수리일 기준 매 2년마다 제출

- □ 해외부동산취득자가 그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투자원금 및 과실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이를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다만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신고절차 준수 필요

# 나.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1) 신고의무

□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물권, 임차권 등)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규정 §9-42②)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
-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혹은 신고면제사유\*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 ①「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인 조광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② 비거주자가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③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④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⑤ 외국인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규정 §9-42③)
  - 신고면제사유 및 외국환은행장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관련 주의사항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대금에 임대자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포함 되어 있을 경우 등에는 동 비거주자가 대출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외국환 거래법규상 신고 등을 하였는지 확인할 필요

- (2) 매각대금의 지급(규정 §9-43)
- □ 매각대금의 해외지급
  - 외국환거래규정의 신고예외 대상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신고를 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 취득 및 매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
  - 상기 이외의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한 후 대외지급수단 매입 후 지급

# 5 금융기관 해외투자 및 대북투자 신고절차

## 가.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와 관련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08.9.1시행, 이하 "진출규정")에 따라금융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등을 하고 사후관리(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안내서\* 참조, '11.11월)

# (1)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진출규정 §3, §5, §6, §16)

- □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시 금융위\*에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며, 금융·보험업이외의 업종에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금융·보험업 해외직접투자시 신고수리를 위한 서류는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에 제출
  - 금융위가 신고수리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 감독원장**에게 신고
  - **금융감독원장**이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 작성 및 신고 내용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보고서 등도 제출받음
- □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는 자본적정성 기준 및 자회사 출자요건 등을 충족해야 됨

<sup>\*</sup> www.fss.or.kr(업무자료 → 공통업무 → 외국환업무자료)

투자대상			신고등 절차			
T/141/8		종전		제정(후)		
① 금융기관이	가. 금융・보험업종에 투자		기재부 장관	신고 수리	금융위	신고 수리
	나. 기타 업종에 투자		외국환 은행장	신고	금감 원장	신고
② 금융기관이 투자한 해외 현 지 법 인 금융기관이 다시 <u>현지</u> 자화사 또는 손 회 사 에 투자시	가. 금융기관이 <u>50%이상</u> 투자한 현지	지점설치 또는 자회사 투자시	기재부 장관	신고 수리	금감 원장	신고
		50%이상 투자한 자회사의 손회사 투자	기재부 장관	신고 수리	금감 원장	신고
	법 인 금 융 기관의 경우	50%미만 투자한 자회사 손회사 투자시	기재부 장관	신고	금감 원장	신고
	나. 금융기관이 50% 미 만 투자한 현지 법 인 금 융 기관의 경우	지점설치 또는 자회사 투자시	기재부 장관	신고	금감 원장	신고
		자회사의 손회사 투자시	기재부 장관	신고	금감 원장	신고

# (2)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진출규정 §8, §17)

- □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 감독원장에게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며, 해외사무소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금융기관 해외지점 설치 신고수리는 자본적정성 기준 및 경영실태평가등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됨

대상 행위	신고등 절차				
पाठ अम	종전		제정(후)		
① 해외지점 설치시	기재부장관	신고수리	금감원장	신고수리	
② 해외사무소 설치시	기재부장관	신고	금감원장	신고	
③ 신고수리 내용 또는 소재지 변경	기재부장관	신고	금감원장	신고	
④ 해외지사 청산	기재부장관	신고	금감원장	신고	
⑤ 명칭 변경 및 동일지역내 소재지 변경	기재부장관	보고	금감원장	보고	

# (3) 금융기관의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진출규정 §7)

- □ 국내 금융기관이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 (종전에는 한은총재)에게 **신고**하도록 함
  - 또한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종전에는 한은총재)에게 신고하도록 함
  - 역외금융회사가 자본잠식 또는 투자금 전액회수 상태에서 6월
     이상 존속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청산신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나. 대북투자관련 신고절차(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거래지침 §7)

- □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통일부의 협력사업 승인 또는 신고수리 후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장 앞 신고** 필요
  - ㅇ 외국환거래법규상 해외직접투자절차 준용

# (참고)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개정 주요내용('09.7.31 시행)

- 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부투자 관리를 위한 「비거주자원 화계정」설치
  - 대북 대부투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대북투자자의 편의 제고 및 투자실적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부투자시 북한으로의 자금이동 없이 모기업이 국내에서 건축·시설계약 등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
- 현행 규정상 대부투자로 인정되지 않아 경협보험 가입, 투자실적 관리 등에 어려움 야기
- □ 대부투자시 대북투자자가 현지법인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 활용토록 예외 인정(지침 §7조의1 ②항)
  - \* 대북투자자가 「비거주자원화계정」에 자금 송금 및 해당 자금 지급시 지정 외국환거래은행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자금흐름 관리
  - 원화 계정을 활용하여 환전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국내 발생 대북투자액 확인이 가능하여 기업들의 편의도 고려
- ② 통일부 협력사업 승인 이전에 지불되는 개성공단 토지분양대금에 대한 신고규정 마련(지침§7조의1 ③항)
  - 대북투자시 선 신고 후 투자실행이 원칙이나, 개성공단의 경우 선 토지분양 후 협력사업 승인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협력사업 승인전 투자(토지분양대금) 실적 인정 곤란
  - \* 개성공단 투자절차 : 「토지 분양  $\rightarrow$  협력시업 승인  $\rightarrow$  대북투자신고 및 투자실행」
  - ⇒ 투자기업이 **제7조 투자의 신고 시점에 사전투자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의 장에게 **신고**토록 함으로써 투자실적 인정

# 6 해외투자 관련 위규 사례

## 해외직접투자 관련 위규사례

### 【사례 ①】 해외직접투자 사후 신고

## (위규 내역)

(주)△△의 대표이사 김○○은 2011.2월 중국 출장시 휴대반출한 자금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011.8월 ○○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추가 투자금액을 현지법인으로 송금

## (유의사항)

거래당사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시 현지법인의 사전 설립 또는 지분 취득 이전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여야 함

지분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법규 위반이며 제재기관의 제재 후 사후신고가 가능

단, 신고절차 이행전 미화 1만불 범위내에서 지급가능하나, 이 경우 당해 거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절차를 이행하 여야 함

## (체크포인트)

- ◇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모든 신고절차는 **사전신고**가 원칙
- ◇ 현지법인을 먼저 설립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필요
- ◇ 사전신고의무를 누락한 경우에는 제재기관의 제재를 받은 후 신고기관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안내

관련 규정:「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사례 ②】 증여성 송금을 통한 해외 현지법인 설립

### (위규 내역)

(주)△△은 2010.1월 ××은행 ○○지점에서 지급사유를 '자본금납입' 으로 기재한 증여성송금을 신청하여 5만불을 송금한 후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

### (유의 사항)

거래당사지는 증여성 송금을 위한 지급신청서\*상 **지급사유가 주금납입,** 지분취득 등으로 기재한 경우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함

외국환은행은 현지법인에 대한 증여성 송금은 매우 드문 사례인 점을 감안하여 해외직접투자(지분 또는 대부투자) 목적의 송금여부를 확인

\* 5만불 초과 증여성 송금시 한국은행총재앞 신고 필요

# (체크포인트)

- ◇ 고객의 편의를 위해 지급신청에 대한 내용확인이 소홀하지 않는가
- ◇ 증빙없는 송금방식이 관련법규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없는가
- ◇ 위규사례 발생예방을 위한 업무전산화 등 제도적 개선점이 없는가 (거주자의 해외 법인앞 증여성 송금시 송금사유 재확인)
- ◇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취득 목적의 송금인 경우 송금금액과 관계없이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화증권취득 신고절차를 이행토록 안내

관련 규정:「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사례 ③】 투자제한 회피를 위한 타인명의 해외직접투자

## (위규 내역)

유OO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명의의 해외직접투자가 제한됨에 따라 2009.11월 친척명의로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중국소재 OO유한공사를 설립(자본금 100만불)한 후, 2010.2월 현지에서 투자지분을 본인 명의로 변경

# (유의사항)

거래당사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지 않고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 는 서류를 제출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위한 투자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포함)의 자격요건 심사과정에서 신용정보등록기관 등록여부와투자재원 조달방법 등에 대해 확인하고, 사후관리과정에서 신고를받은 투자자와 지분 취득자가 상이한 경우 관련법규 위반임을 안내

# (체크포인트)

- ◇ 해외직접투자자의 자격요건은 적정한가
- ◇ 기한내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보고서(외화증권취득보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 사유 확인
- ◇ 해외밀반출, 횡령 등의 자금세탁 혐의는 없는가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사례 ④】 직원명의 분산송금을 통한 현지법인 설립

## (위규 내역)

국내 의류제조업체 (주)OO의 대표이사인 최□□은 2009.9월 본인 명의로 중국에 의류회사를 설립하고, 2010.3~4월중 회사직원의 명의를 빌려 국내 3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증여성 송금방식으로 30만불을 분산송금한 후 중국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

# (유의 사항)

외국환은행은 송금신청서상의 송금사유가 증여성송금으로써 수취인이 해외법인인 경우에는 송금신청인에게 수취인과의 관계, 송금사유 등을 문의하여 해외직접투자 목적의 변칙적인 송금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대여가 의심되는 경우 명의대여가 불법적인 행위이며, 명의대여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체크포인트)

- ◇ 위규사례 발생예방을 위한 업무전산화 등 제도적 개선점이 없는가 (거주자의 해외 법인앞 증여성 송금시 송금사유 재확인)
- ◇ 동일 수취인에 대한 증여성송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 ◇ 2인이상의 송금인이 동일한 수취인에 송금하는지 여부
- ◇ 명의대여가 의심되는 경우 현지법인의 주주명부를 요청하여 확인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사례 ⑤】 기존 현지법인의 지분을 신규설립 법인에 현물투자 방식으로 이전

## (위규 내역)

'10.5월 (주)OO는 '09.2월 해외직접투자 신고하고 취득한 중국 현지법인의 지분을 '10.4월 신규로 해외직접투자 신고한 홍콩 현지법인에 현물투자방식으로 출자하여 홍콩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함

## (유의 사항)

거래당사자는 본 거래가 국내에서의 송금이 없는 현지법인간 지분이전거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투자주체인 국내법인이 기존 중국법인 지분에 대한 내용변경 신고 및 홍콩 현지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여야 함

외국환은행은 투자주체인 국내법인이 기존 중국법인 지분에 대한 내용변경 신고 및 홍콩 현지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가 있음을 안내

## (체크포인트)

- ◇ 국내 송금이 없더라도 해외직접투자관련 신고의무가 발생하는가
- 기업이 은행에 질의하는 경우로써 영업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점의 전담부서에 문의하거나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 책임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고객과의 분쟁발생 방지
- ◇ 신고내용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사항임을 고객에 수시로 주지시킬 필요

관련 규정:「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사례 ⑥】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제3자가 지분취득

### (위규 내역)

유〇〇는 '10.3월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외화를 송금하였으나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인명의로 지분을 취득

김○○는 '10.5월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받고 외화를 송금하였으나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49%의 지분을 취득

### (유의사항)

거래당사자는 최초 신고한 투자자 명의로 지분취득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이전에 '변경신고'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여 야 하며, 제3자 명의로 지분취득시 제3자는 신고누락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지

외국환은행은 사후보고서를 받았을 때 최초 신고한 대로 지분이 취득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제3자의 명의로 지분이 취득 되었을 경우 최초 신고한 투자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 미이행으로, 신고없이 지분을 취득한 제3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누락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음을 안내

## (체크포인트)

- ◇ 신고한 주체가 본인 명의로 지분을 취득하였는가
- ◇ 신고하고 송금한 금액을 취득하였는가
- ◇ 제3자가 취득한 경우나 취득금액이 상이한 경우 금감원에 통보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사례 ⑦】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여러명의 개인이 지분취득

## (위규 내역)

(주)△△는 '10.1월 동남아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100% 지분 취득으로 신고하고 투자자금을 송금하였으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개인주주가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현지법을 따르기 위하여 6명의 개인이 1%씩 지분을 취득

## (유의 사항)

거래당사자는 현지법인 설립과정에서 현지법을 정확히 확인하여 법인이 단독으로 설립할 수 없는 경우 임원 또는 개인이 지분참여 를 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신고사항임을 유의

외국환은행은 사후보고서를 받았을 때 신고주체 및 신고금액대로 지분취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여러 명의 개인(6~7명등)이 1주나 1%씩 취득한 경우 현지법에 의한 불가피한 취득이라고 하더라도 최초신고자 및 신규취득자 모두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임을 안내

# (체크포인트)

- ◇ 일부국가의 경우(주로 동남아국가) 외국인 단독투자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독투자 가능여부 등을 확인했는지 문의하고 법인 설립시 개인주주가 포함되어야 할 경우 각 개인주주들도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화증권취득신고를 해야함을 안내
- ◇ 신고시 현지의 변호사의 말을 정확하게 확인하였는지 확인

관련 규정:「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사례 ⑧】 대부투자 신고 후 1년 이내 회수

### (위규 내역)

(주)○○○사는 2007.5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캄보디아에 대해 2011.5월을 만기(1년거치 3년만기)로 하는 대부투자 방식의 해외직접 투자 신고를 한 후 250만불을 송금하였으나 투자 직후인 2007.7월~12월 에 대부투자금액을 회수

## (유의 사항)

거래당사자는 현지법인에 대한 대부투자시 반드시 만기가 1년 이상인 금 전대차계약이며, 특별한 사유<sup>\*</sup>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 조기 회수가 불가 함을 인지

\* 해외직접투자자의 회생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변경신고 가능

외국환은행은 대부투자방식의 해외직접투자는 대여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하므로 1년 이내 조기회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을 안내 하고, 현지사정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조기회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수전 외국환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

또한 금전대차계약 조건 등에 따라 1년 이내 조기상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가 아닌 금전대차(외화대출)로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안내

## (체크포인트)

- 대부투자방식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검토시 금전대차계약서상 대부기간과 상환조건을 반드시 확인
- 대부투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1년 이상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1년이내 상환이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안내하고 불가피한 경우 자금회수 전 변경신고 하도록 안내
- ◇ 투자자가 변경신고없이 1년 이내 대여자금을 회수하여 외화자금이 내도한 경우 외국환은행은 지급등을 중단하고 금감원앞 위반사실보고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9-5조

### 【사례 ⑨】 해외직접투자 유형 변경

### (위규 내역)

박○○은 2011.6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 취득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50만불을 송금하였으나 30만 불에 대해서만 지분을 취득하고 20만불을 현지법인에 대여함

## (유의 사항)

거래당사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시 투자목적이 지분취득인지 금전대여 인지 확인하여 구분 신고를 하여야 함

외국환은행은 사후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송금금액과 지분취득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불일치사유를 확인하고, 임의로 투자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법규 위반임을 안내

한편, 금전대여를 통한 대부투자는 사전에 투자대상 법인에 지분투자 하여 해당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안내

## (체크포인트)

- ◇ 해외직접투자 목적이 지분취득인가 금전대여인가
- ◇ 대부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대부투자대상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가
- ◇ 해외투자금액과 지분취득금액이 일치하는가
- ◇ 신고한 내용을 송금 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제재대상임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사례 ⑩】 해외직접투자 사후 변경신고

# (위규 내역)

(주)OO는 2009.9월 ××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고 취득한 48백만유로 상당의 덴마크소재 현지법인의 지분(30%)을 (주)△△에게 매각하였으며 양도 1년 6개월 후인 2011.3월 외국환은행장앞 해외 직접투자 내용변경을 사후에 신고

## (유의 사항)

거래당사자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내용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 변경일 자 등을 확인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여부를 판단

외국환은행은 신고 전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임을 안내

## (체크포인트)

- ◇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모든 신고절차는 사전신고가 원칙
- ◇ 내용변경 신고의 경우 사후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점에 유의
- ◇ 거주자간 지분 양도의 경우 양수인, 양도인 모두에게 신고의무 존재 (외화의 송금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의무 존재)
- ◇ 사전신고의무를 누락한 경우에는 제재기관의 제재를 받은 후 신고기관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안내

관련 규정:「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사례 ⑪】 현물투자로 인한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 (위규 내역)

(주)○○사는 2009.7월 현금투자 목적으로 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 (신고금액 100만불)를 하고 70만불을 송금한 후 나머지 자본금은 미국 현지법인의 요구로 2009.11월 설비수출을 통해 납입함

## (유의 사항)

거래당사자는 현금투자액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도 사전신고대상이며, 부득이 무역거래를 통해 현지 수출한 현물을 출자할 경우에도 자본전입 이전에 해외직접투자로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은행은 신고금액과 송금금액 또는 송금금액과 지분취득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불일치사유를 확인하고, 외국환은행장앞 신고없이 현물투자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법규 위반임을 안내

## (체크포인트)

- ☆ 해외직접투자의 투자방식을 변경(현금→현물등)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신고절차 필요
- ◇ 해외투자금액과 지분취득금액이 일치하는가
- ◇ 신고수리받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제재대상임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해외지사 설치 관련 위규사례

#### 【사례 ①】 해외사무소 운영경비 편법 송금

### (위규 내역)

컨설팅회사인 (주)OO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없이 2010.2월 시장 조사 목적으로 인도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2010.3월~2011.8월중 매월 3천불씩 사무소 운영경비를 증여성 송금방식으로 송금

## (유의 사항)

거래당사자는 시장 조사목적 등 마케팅 목적으로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은행은 지급신청서상 수취인이 해외지사로 추정되는 문구 (××Branch, ××Office, ××Representative 등)로 기재되고 송금사유가 증여성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송금목적이 해외지사 운영경비인지 여부와 수취인인 해외지사가 정당하게 설립되었는지를 확인

## (체크포인트)

- ◇ 증여성송금의 수취인이 개인이 아닌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사인 경우 송금사유 재차 확인
- ◇ 동일 수취인에 대한 증여성 송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 ◇ 위규사례 발생예방을 위한 업무전산화 등 제도적 개선점이 없는가 (거주자의 해외 법인앞 증여성송금시 송금사유 재확인)
- ◇ 사전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감독 기관의 제재 등 적법절차를 안내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 【사례 ②】 해외지점 운영경비 편법 송금

## (위규 내역)

(주)××의 대표 최○○은 2010.1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없이 휴대한 외화로 일본소재 해외지점을 설립하고, 2010.2월~2010.9월중 15만불 상당의 영업기금을 해외지점 앞으로 송금

### (유의사항)

거래당사자는 해외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관련비용 (운영경비 및 영업기금 등)을 송금하여야 함

외국환은행은 송금신청서상의 해외 수취인이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고 송금사유가 경상적인 운영경비나 영업기금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해외 지점의 설립신고절차가 사전에 정당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전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안내

## (체크포인트)

- ◇ 국내법인의 해외지사앞 송금신청을 받은 경우 동 해외지사에 대한 설치신고가 선행되었는지 확인
- ◇ 사전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감독 기관의 제재 등 적법절차를 안내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 【사례 ③】 해외사무소를 통한 편법 투자

## (위규 내역)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OO은 2010.6월 외국환은행장 신고없이 미국 소재 현지사무소를 폐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잔여재산 및 운영중 발생한 잔여재산으로 자동차 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을 설립함

### (유의 사항)

외국환은행은 해외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송금액이 사무소활동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해외 직접투자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현지법인에는 송금할 수 없음을 안내

또한, 회수대상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현지에서 해외직접투자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함을 안내

## (체크포인트)

- ◇ 해외사무소 운영경비를 위한 송금 규모가 적정한가
- ◇ 해외지사 설치완료보고, 연도별 영업활동보고 등 확인
- ◇ 해외지사 폐쇄 보고시 회수대상 잔여재산 보유여부 확인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제9-24조, 제9-25조

### 【사례 ④】 해외사무소 설치 신고 후 현지법인 설립

### (위규 내역)

(주)OO은 2011.3월 해외지사 설치신고를 하고 외화자금을 송금하였으나 해외지점이 아닌 **혂지법인**을 설립

### (유의 사항)

거래당사자는 해외지사와 현지법인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거 래외국환은행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고절차를 이행하여 야 함

외국환은행은 기업이 해외지사와 해외법인의 차이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신고 처리시 해외법인과 해외지사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여 정확하게 신고될 수 있도록 안내

## (체크포인트)

- ◇ 해외법인이 아닌 해외지사가 맞는가
- ◇ 해외지사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가
- ◇ 해외지사 설치신고의 경우 신고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켰는가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 【사례 ⑤】 사후 보고서 미제출

### (위규 내역)

(주)OO는 2010.12월 독립채산을 하는 해외지점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 활동을 영위하였으나 매 회계기간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음

### (유의 사항)

독립채산을 하는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는 당해 설치자의 **매 회계기간 별로** 각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한 순이익금의 처분 내역을 결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 확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외국환은행은 신고의무를 이행한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신고서 제출시 사후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안내하는 설명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도록 함

### (체크포인트)

- ◇ 해외지점이 독립채산을 하는 지점인가
- ◇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금이 회수 되었는가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 부동산 취득 관련 위규사례

### 【사례 ①】 유학경비 송금을 통한 해외부동산 취득

### (위규 내역)

김○○는 2010.5월~12월중 3차례에 걸쳐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의 유학자금 명목으로 외화자금을 송금하였으나 동 금액 중 일부와 현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합하여 100만불 상당의 주택을 취득

### (유의 사항)

거래당사자는 유학생자녀가 주거할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 하였을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함을 인지

외국환은행은 유학경비 송금규모가 상식적인 수준인지 확인하고, 통상적인 유학경비 수준을 크게 초과한 경우 유학경비가 아닌 다른 목적의 송금을 편법 송금하는지에 유의(특히 해외부동산 투자 가능성에 유의)

### (체크포인트)

- ◇ 유학경비(또는 증여성 송금) 등의 송금규모가 통상적인 해당 외환 거래규모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가
- ◇ 유학경비의 송금과 관련하여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가
- ◇ 유학경비(또는 증여성 송금) 송금 시기가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가능성에 유의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9-39조

### 【사례 ②】 신고수리받은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 취득

### (위규 내역)

오○○는 2010.2월 해외부동산취득 신고수리를 받고 90만불을 송금하였으나 임의로 신고수리 받은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취득

강○○는 2011.2월 해외부동산취득 신고수리를 받고 30만불을 송금하였으나 현지에서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 (유의 사항)

거래당사자는 신고수리받은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취득이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외국환은행은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검토시 신고수리 받은대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임의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관련법규 위반임을 안내

### (체크포인트)

- ☆ 해외부동산취득 신고수리시 임의로 취득물건을 변경하거나 명의인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임을 충분히 안내
- ◇ 신고수리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으로 인한 제재 이외에도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 될 수 있으므로 신고수리내용대로 이행하도록 명확히 안내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9-39조

#### 【사례 ③】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위규 내역)

2007.5월 미국 국적을 취득한 비거주자 김〇〇은 2009.10월 미국에서 송금한 금액(6억원)과 국내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4억원) 받은 금액으로 10억원 상당의 서울소재 아파트를 구입

### (유의 사항)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은행은 자행으로 입금된 외화자금의 입금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목적이 국내부동산 취득일 경우에는 관련신고절차 이행<sup>\*</sup>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시에도 대출목적이 국내부동산 취득인 경우에는 취득 신고절차 이행<sup>\*</sup> 여부를 확인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시 **잔금 지급전**에는 취득신고가 가능하므로 외국환은행에서 신고절차를 안내할 경우 대부분의 위규거래 예방 가능

### (체크포인트)

- ◇ 자행으로 외화자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자금의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그 용도가 국내부동산 취득일 경우 신고절차 안내
- ◇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취급시 대출자금의 용도를 확인하고 대출 용도가 국내부동산 취득일 경우 신고절차 안내
- ◇ 개인의 상당규모 이상의 증여성 수령거래에 대해서는 수령자금의용도 재차 확인 및 관련법규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9-42조

### 【사례 ④】 주한미군의 국내부동산 취득

### (위규 내역)

주한미군인 비거주자 A는 2010.10월 본인자금(2억원) 및 국내은행 대출금(3억원)으로 5억원 상당의 용산소재 아파트를 구입

### (유의 사항)

거래당사자가 주한미군(동거가족 포함)일 경우 국내 체류기간과 상관 없이 비거주자이므로 국내부동산 취득시 신고의무가 발생함

외국환은행은 주한미군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시 대출목적이 국내 부동산 취득일 경우에는 관련 신고절차를 안내

### (체크포인트)

- ◇ 주한미군(동거가족 포함)은 국내 체류기간과 관련없이 비거주자로 분류되므로 국내부동산 취득시 신고절차 필요
- ◇ 주한미군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 불필요
- ◇ 주한미군과 같은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업무 취급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 신고여부 확인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 【사례 ⑤】 증빙없는 송금방식을 통한 골프회원권 취득

### (위규 내역)

대기업 임원인 김○○은 2010.4월 중국 여행 중 골프회원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하고 있던 외화로 현지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10.5월~7월중 중도금 및 잔금을 증여성으로 송금

### (유의사항)

은행을 통한 송금방식이 아니더라도 해외여행목적으로 휴대하고 있던 자금으로 해외 골프회원권 등을 구매할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은행은 증빙없는 송금방식에 따른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수취인이 해외법인이고, 수취인이 "golf, resort, real estate 등"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회원권 및 부동산 취득을 위한 송금 가능성에 유의

### (체크포인트)

- ☆ 현지법인의 이름에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 수취인의 성격을 짐작할수 있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가
- ◇ 위규사례 발생예방을 위한 업무전산화 등 제도적 개선점이 없는가 (거주자의 해외 법인앞 증빙없는 송금시 송금사유 재확인)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 VI 현지금융 신고 및 관련 위규사례

# 1 현지금융

### 가. 현지금융의 개념

현지금융이란 거주자(개인 제외) 및 그 현지법인등\*이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함

- \* 거주자의 해외지점, 현지법인,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 현지금융은 차입자금의 국내유입 혹은 국내예치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규정 §7-14에 따른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와 구별됨

### 나. 신고의무(규정 §8-2)

- 거주자·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담보 제공 유무에 따라 해당 신고의무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현지법인등이 거주자의 보증·담보제공을 받아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동일 신용공여한도 제공은행으로부터 총액 보증한도를 정하여 사전에 포괄신고 가능
  - \* 단,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가능금액은 보증한도총액을 신용공여수혜 현지 법인의 수로 나눈 금액의 2배 이내임

차입주체	보증·담보제공	신고의무자	신고기관
거주자의 현지금융 <sup>*</sup>	보증·담보제공이 없는 경우	다체 기즈기	નો પ્રો નો નો <u>ો</u>
	본인 혹은 외국환은행의 보증·담보제공	당해 거주자   지정거리	
	다른 거주자의 보증·담보제공	보증제공자	외국환은행
	보증·담보제공이 없는 경우	신고	면제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	외국환은행의 보증·담보	당해 거주자	지정거래
1 2 100	당해 거주자 혹은 다른 거주자의 보증・담보제공	보증제공자	외국환은행

<sup>※</sup> 단, 거주자가 외화증권발행방식으로 미화 3천만불을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부장관 신고사항

# 다. 보고의무(규정 §8-4)

- 현지금융을 받은 거주자 혹은 현지금융을 받은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는 현지금융의 차입·상환 반기보를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장에게 다음 반기 첫째달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현지법인등이 보증·담보제공 없이 현지금융을 받아 신고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그 차입주체가 해외지점, 거주자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현지법인 또는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인 때에는 동 보고의무가 적용됨

# 라. 변경신고의무 및 사후관리의무(규정 §8-2③,④)

- 현지금융을 통해 차입한 자금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및 차입원리금의 상환 여부에 대하여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
-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신고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2 현지금융 관련 위규사례

### 【사례 ①】 지급보증 L/C(Stand by L/C)를 통한 현지금융

### (위규 내역)

(주)OO는 중국소재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국내  $\triangle \triangle$  은행에서 지급보증L/C(Stand by L/C)를 개설하여 동 외국환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음

## (유의 사항)

거주자가 거주자가 Stand by L/C를 통해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해 외국환은행의 지급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앞 신고하여야 함

Stand by L/C 개설 사실을 외국환은행이 인지하고 있더라도 외국환 거래법에 의거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법 위반이므로, 외국환 은행은 Stand by L/C 형태의 지급보증 거래시 반드시 외국환거래법상 적합한 신고를 이행하도록 안내

### (체크포인트)

- ◇ 외국환거래법상 현지금융 신고가 이루어졌는가
- ◇ 자행이 현지금융에 관한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 ◇ 자행이 현지금융에 관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아닐 경우 반드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현지금융의 차입·상환 연보를 보고하도록 안내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8-1조, 제8-2조, 제8-4조

### 【사례 ②】 현지법인에 대한 현지금융관련 지급보증

### (위규 내역)

2010.7월 (주)○○의 인도네시아소재 현지법인 PT.××가 현지 건설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현지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은행에 모회사인 (주)○○가 직접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Comfort Letter를 제공

### (유의 사항)

신고절차가 필요한 외화보증 거래는 보증서의 형태에 불문하고 문언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 당사자간 의사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환 책임을 부담하는 모든 보증거래이므로 약정서에 보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신고절차가 필요함

\* guarantee, letter of commitment, comfort letter, letter of undertaking 👼

외국환은행은 사후관리과정에서 현지법인이 상당규모의 현지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입금 상환을 위한 본사 등의 보증이 연계 되었는지를 확인

### (체크포인트)

- ◇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이 있는 경우 본사 보증 또는 상환보장 문구 포함여부 확인
- ◇ 상환보장이 있는 경우 보증행위에 대한 별도의 신고절차를 안내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

### 【사례 ③】 현지법인이 아닌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

### (위규 내역)

(주)OO은 2010.9월 중국소재 거래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 거래업체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자재 구매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 △△지점에 현지거래업체를 수혜자로 하는 지급보증을 의뢰하고, 국내은행의 지급보증과는 별도로 현지은행과 현지업체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를 약정

### (유의 사항)

외국환은행은 기타의 방식에 의한 보증가능성에 유의하여 관련 계약서 및 거래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고없이 보증하는 경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안내

## (체크포인트)

◇ 거주자가 해외에서 채무이행 등을 위해 지급보증을 의뢰한 경우 현지 채권자 등과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 제7-19조

# VII 외환거래 신고 및 위규시 처리절차

# 1 신고등 절차

- □ 거주자가 외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거래외국환 은행,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 앞 확인을 통해 신고(수리)대상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 \*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 www.bok.or.kr  $\rightarrow$  민원 · 참여마당  $\rightarrow$  외환거래심사업무
  -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www.mosf.go.kr)
  -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수리)업무는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관련 실무는 권역별 관련 부서에서 담당

### 금융기관 해외직접투자 관련 부서 연락처

담당부서명	전화번호
외환감독국 (총괄)	3145-7927
은행감독국	3145-8024
금융투자감독국	3145-7603
자산운용감독실	3145-6707
보험감독국	3145-7457
상호여전감독국	3145-7563
저축은행감독국	3145-6799
감독총괄국	3145-8010

#### 2 위규시 신고 및 제재 절차

### 가. 외국화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조사

- □ 금융감독원의 혐의거래 모니터링, 관련기관(지정거래외국환은행, 한국은행, 국세청 등)의 위반혐의 제보, 외국환거래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을 통해 확인된 외국환거래에 대해 조사
  - 금융감독원(외환조사팀)은 위반자등으로부터 경위서와 관련 서류\*를 징구하고 면담, 자료 확인 등을 통해 위반여부 확인
    - \* 관련 계약서, 자금 입출금 증빙,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회계 연도 결산서류 및 기타 소명자료 등

### 외환조사 및 행정처분 절차

### 경위서 접수

Д

경위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외환조사팀)에 제출

### 외환조사

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여부 조사

\*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mark>사전통지 및 의</mark>견진술

Д

Ţ

<u>제재심의위원회</u>

금융위원회 처분 금융위원회 처분에 대해 서면 통보

①외환거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최소 10일,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최소 15일간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

②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 의견진술기한 내에 별: 다른 이의 없이 자진납부(20% 감경)하면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결

### 나. 제재내용

## (1) 행정처분

### [경고]

- □ 기획재정부장관은(시행령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위임) 다음의 경우에 '경고' 처분(법 §19①)
  - ①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위반금액 1만달러\* 또는 2만달러\*\* 이하의 거래로서 절차준수, 허가 또는 신고의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 법 제15조(지급절차),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7조(지급 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위반인 경우
    - \*\* 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의 위반인 경우

### [거래정지 또는 허가취소]

□ 최근 2년 이내에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자의 거래 또는 행위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을 정지 또는 제한하거나 허가 취소' 처분(법 §19②)

### [과태료]

□ 기획재정부장관(시행령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위임)은 다음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32①)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 ②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 ③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자본 거래를 한 자
- ④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 ⑤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 거래를 한 자
  - ※ 제16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금액: 25억원이하(초과는 벌칙대상\*) 제1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금액: 50억원이하(초과는 벌칙대상\*)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32②)
  - ①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보고를 한 자
  - ②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
  - ③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④ 제20조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⑤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⑥ 제20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⑦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자
  - ⑧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 (2) 벌칙(법 §27, §28, §29 및 §31)

- □ 외국환거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 처벌 규정
  - Safeguard조치 위반, 채권회수의무 위반, 외국환업무취급에 대한 등록의무 위반, 지급·지급방법·자본거래 등에 대한 각종 신고 또는 허가의무 위반 등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

# (3) 몰수・추정(법 §30)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귀 금속·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이를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 가능

# (4) 경과조치(법 부칙 제3항)

□ '09.2.4이전의 행위에 대한 처분,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름

현행「외국환거래법」상 법규위반자에 대한 제재

;	제재유형	제재내용	관련법규	처분
행 정	거래정지	경고 또는 관련외국환거래 정지 (1년이내)	법 제19조	금융위원회
처 분	과태료	최고 5천만원 또는 최고 1천만원	법 제32조	금융위원회
벌	징역・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27조 내지 제29조	법원
칙	몰수・추징	외환, 증권,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추징	법 제30조	법원

# 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사례

# 과태료 부과기준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금융위 고시)

### 1. 목적

이 기준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2. 과태료 산정방식

- 가. 위반행위별 위반금액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하되 위반금액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별도 정액금액으로 한다.
  - ① 자본거래 신고의무(법 제18조) 위반행위는 계약금액을, 지급·영수 (법 제15조) 및 지급방법(법 제16조) 위반행위는 지급·영수 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한다.
  - ② 신고 등 의무를 위반하여 자본거래를 하고 그에 따라 지급・영수를 한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계약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결과를 고려하여 위반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 다.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경 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 3. 예정금액의 산정

<b>처벌조항</b> (외국환거래법)	<b>위반내용</b> (외국환거래법)	부과금액
제32조제1항 제1호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ul> <li>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및 불법목적인 경우: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 의 2 중 높은 금액</li> <li>기타: 5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1 중 높은 금액</li> </ul>
제32조제1항 제2호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ul> <li>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위반시</li> <li>: 5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li> <li>분의 1중 높은 금액</li> <li>기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li> </ul>
제32조제1항 제3호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한국은행 등 신고사항 위반시: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 분의 2 중 높은 금액 -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자본 거래 신고의무 위반시 100만원
제32조제2항 제3호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200만원
제32조제2항 제4호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	100만원
제32조제2항 제6호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600만원
제32조제2항 제7호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200만원
제32조제2항 제8호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00만원

###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 가중 및 감경사유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 산정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상의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한다.

	가중 및 감경 사유	비율
가중	- 고의, 악의로 위반한 경우	예 정 금 액 의 40%이내
감경	<ul> <li>위규자가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위규행위에 고의성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li> <li>관계기관에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li> <li>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동 거래에 따른 지급・영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li> </ul>	예 정 금 액 의 40%이내

###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3)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과태료 부과 사례

유형별 위반사례	과태료부과 금액(원)	비고
1. 해외직접투자		
□ ㈜○○는 '10.9월 동사의 일본 현지법인 △△가 일본법인의 주식(20.94%)을 비거주자로부터 매입 하는데도 외국환은행장앞 신고를 누락하였음	36,710,000	위반금액 1% 과태료부과
√ 투자자는 현지법인 설립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설립등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래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함		
□ ㈜△△는 '10.12월 외국환은행장앞 신고없이 파키 스탄에 지점을 설치하고 이전거래 명목으로 4만 3천불을 송금함	500,000	"
<ul><li>✓ 투자자는 외화송금 신청시 송금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외국환은행은 해외지사 설치요건 충족 여부 및 송금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li></ul>		
□ ○○㈜는 '10.12월 외국환은행장앞 신고없이 국내 법인 △△에게 중국 소재 현지법인 3곳의 지분 (100%)을 10억원에 매도하였음	10,000,000	"
<ul><li>✓ 투자자가 국내법인에게 해외현지법인을 매도하고 매각대금을 원화로 영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해야함</li></ul>		

2. 부동산 취득		
□ 이○○는 '11.6월 미국 소재 부동산 매입을 위해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를 받고 '11.8월 25만불을 송금하였으나, 신고수리 받은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 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였음	2,730,000	위반금액 1% 과태료부과
√ 해외부동산 실매입자는 신고수리 받은 자와 동일 하여야 하며, 외국환은행은 부동산취득보고서 검 토시 투자자가 신고수리내용대로 취득하였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함		
□ 손△△는 '10.3월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를 받고 미국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신고수리 내용과 달리 현지 모기지 조달로 국내송금액 등이 변경되고 현지 시민권자와 공동취득하였음	2,540,000	위반금액 1% 과태료부과
√ 투자자는 신고수리 받은 내용과 실제 취득 내용이 달라질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 환은행은 신고수리 심사시 동 내용을 명확히 안내		
3. 금전대차거래		
□ 김○○은 '09.6월 한국은행총재앞 신고없이 터키 소재 비거주자로부터 25만불을 차입하였음	6,280,000	위반금액 2%
<ul><li>✓ 외국환은행은 자행으로 외화자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수취인에게 입금사유를 확인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누락된 경우 지급 전 제재기관장앞 위반사실보고를 해야함</li></ul>		과태료부과
□ △△㈜는 '11.8월 한국은행총재앞 신고 없이 일본 소재 현지법인에 4억 8천만원 상당의 외화자금을 대출하였음	9,600,000	n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앞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외화송금시 송금사유를 확인해야함		

4. 기타 자본거래  □ ㈜○○는 '09.4월 외국환은행장앞 신고없이 스웨덴 소재 외국법인과 채권 3만 달러 상당을 상계하였음	500,000	과태료 하한(50만원) 부과
<ul> <li>✓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 환은행장(50만불이하등) 또는 한국은행총재(기타) 앞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거래 전에 주의가 필요</li> </ul>		
□ 제조업체인 (주)○○는 2010.3월 한국은행총재앞 신고없이 원재료 가격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 하여 원재료 공급업자인 독일소재 비거주자와 35만불 상당의 원재료 선물매입계약을 체결	7,400,000	위반금액 2% 과태료부과
<ul><li>✓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상품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함</li></ul>		

# 4 불법 외환거래 신고센터

- □ 불법 외환혐의 거래를 인지한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전화(외환감독국 외환조사팀 ☎ 02-3145-7942~7945)로 신고
  - \* www.fss.or.kr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불법외환거래신고)
  - o 신고인의 실명 등 개인정보는 **엄격히 비밀보장**
- □ 외화밀반출, 수출입관련 불법 외환거래 등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조사감시국 외환조사과(☎ 042-481-7931~3)로 신고
  - \* www.customs.go.kr (신고센터 → 불법외환신고)

### <참고>

#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효율화방안 추진내용

# 가. 추진 배경

- □ **금융감독원**은 개인 및 거래기업이 외국환거래법규를 인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 외환자유화조치에 편승하여 사후관리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한 탈세, 재산의 해외도피 및 해외 비자금 조성 등으로 관련법규를 악용하는 사례를 워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13년부터 시 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사후관리 강화방안 주요 내용(요약)

①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방안 수립·이행
□ '사후관리업무 이행실태 평가' 실시
□ 미이행거래자에 대한 <b>이행강제수단</b> 신설
□ 불법외환거래 억제를 위한 대내외 업무협조체제 구축
- <b>특이유형거래 모니터링</b> 및 기획·테마조사 실시
- 대외 유관기관(국세청, 관세청 등)과의 업무협조체제 구축
②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기능 강화 추진
□ 외국환거래 <b>사후관리 시스템 구축</b>
<ul><li>사후관리 전담조직 설치 및 담당인원 배치</li></ul>
□ 사후관리에 대한 <b>상시감시활동 강화</b>
③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b>'외국환거래 설명회' 개최</b> 확대

### 나. 추진내용

### (1)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방안 수립·이행

- □ '사후관리업무 이행실태 평가' 실시
  - 은행의 사후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sup>\*</sup>를 정기적으로 평가** 
    - 은행 전체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적으로 운용되면 반기별로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이행평가가 부진한 은행에 대 해서는 외환부문검사를 별도로 실시
      -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여부, 미이행 발생 및 보고 건수, 특이유형거래 보고 및 실적, 영업점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활동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이행실태를 평가

### □ 사후관리 미이행거래자에 대한 이행강제수단 신설

- 은행이 금감원에 통보한 미이행거래자의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sup>\*</sup>하고 소재 불명 등으로 자료제출 미이행시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
  - \* 자료제출 : 위규사항에 대해서만 제재, 미회신 : 과태료 별도 부과, 반송 :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후 별도 관리

### □ 불법외환거래 억제를 위한 대내외 업무협조체제 구축

- 사후관리 대상 중 특이유형의 외국환거래<sup>\*</sup>에 대하여는 은행으로 부터 사후관리 이행상황 등을 보고 받아 별도 모니터링을 실시하 여 기획・테마조사시 활용
  - \* 해외SPC 설립 후 대규모 외화(미화 1백만불 이상)를 반출하는 사례, 사후관리의무를 반복적으로(2회 이상) 미이행하는 사례 등

- 대외 유관기관(국세청, 관세청 등)과의 업무협조체제 구축
  - 탈세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외환거래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업무협조관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공동조사** 실시
  - 특히, **외환사기거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통보 하고 불법혐의 발견시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

### (2)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기능 강화 지도

- □ 금감원은 은행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 은행별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영업점에 대한 점검 확대, 특이
     유형거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고
    - 거래당사자에 대하여도 설명서 교부, 자료제출에 대한 **사전고지** 등 **홍보활동 확대**를 추진하도록 지도

### 【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기능 강화방안 꾸요 내용 】

- Ⅱ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 기일관리, 거래당사자앞 사전고지, 특이유형거래 및 특별대상자 관리시스템
- ② 사후관리 전담 조직 설치 및 담당 인원 배치
  - → 기존의 영업점 개별관리에서 본부 전담조직 중심의 중앙집중식 관리로 전환
- 3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상시감시활동 및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 본부부서 및 검사부의 영업점 점검강화, 거래당사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 4 특이유형거래 보고 채널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 →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거래내역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강화 및 금감원 보고

### (3)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 '외국환거래 설명회' 개최 확대

- 은행 외환담당자를 대상으로 연1회 실시하는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12년부터는 금융회사 담당자 이외에 거래당사자(개인 및 기업)를 대상으로한 설명회를 추가
- '13년부터는 외국환 거래기업 등 거래당사자의 신청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설명회 개최를 확대하고, 한국은행·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설명회'를 개최

### □ 사후관리의무 '설명서' 교부·서명

-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외국환거래 신고시 거래당사자에게 사후 관리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서'를 교부 하고 서명을 받도록 조치
  - '설명서' 공통 양식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명서 교부시 '사후관리 의무 사전고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도 첨부

### □ 보도자료 작성·배포 확대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최근 위반사례 및 이에 따른 유의사항을 중심으로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수시로 배포